



정부조달협정(GPA)의  
개정에 따른  
국가계약제도  
정비 방안 연구

2021. 10.

김대식 · 백용선 · 박영숙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정부조달협정(GPA)의 개정에 따른 국가계약제도 정비 방안 연구

2021. 10.

김대식·백용선·박영숙

본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의뢰로 외부 연구진이  
작성하였으며, 본원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b>I. 연구개요</b> .....	<b>1</b>
1. 연구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2
가. 제안요청 내용 .....	2
나. 연구방법 .....	2
<b>II. 개정 정부조달협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b> .....	<b>3</b>
1. 정부조달협정의 개요 및 개정 협정의 발효 배경 .....	3
가. 주요국과의 통신장비 조달시장 개방 .....	3
나. 1994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 .....	8
2. 개정 정부조달협정의 개관 및 시사점 .....	18
가. 개정 배경 및 경과 .....	18
나. 개정 주요 내용 .....	19
다. 국가별 양허안 비교 .....	34
라. 우리나라의 양허 확대 범위 .....	36
마. 시사점 .....	37
<b>III. 정부조달협정 개정 내용을 계약법령에 반영 및 정비</b> .....	<b>39</b>
1.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 정비 .....	39
가. 정의 .....	39
나. 적용범위 .....	41
다. 일반원칙 .....	44
라. 참가조건 .....	46
마. 유자격자명부 .....	49
바. 입찰공고 기간 .....	51

---

---

사. 기술규격, 입찰서류 .....	53
아. 전자경매 .....	57
자. 자유무역협정 관련 특례 정비 .....	57
2. 특정물품 등의 조달 특례규정·규칙 정비 또는 특정조달 규정·규칙과의 통합 여부 검토 .....	61
가. 특정물품조달 특례규정·규칙의 의의 .....	61
나. 특정조달 특례규정·규칙과 특정물품조달 특례규정·규칙의 통합 여부 검토 .....	63
<b>IV. 국제입찰 기준금액 고시 정비 및 기타공공기관 국제입찰 근거 마련</b> ..	<b>80</b>
1. 국제입찰 기준금액 고시 정비 .....	80
2. 기타공공기관 국제입찰 법적 근거 마련 검토 .....	83
<b>참고문헌</b> .....	<b>90</b>
<b>부록. 특정조달 특례규정 개정(안)</b> .....	<b>91</b>

---

## 표목차

---

〈표 II-1〉 한·미 ROU의 주요 내용 .....	5
〈표 II-2〉 한·EU 통신협정 주요 내용 .....	7
〈표 II-3〉 한·캐나다 통신협정 주요 내용 .....	8
〈표 II-4〉 WTO 정부조달협정 주요 가입국 양허하한선(시장개방기준) .....	17
〈표 II-5〉 입찰서류 필수 포함 사항 .....	30
〈표 II-6〉 개정 GPA 양허하한선 국가별/주체별 비교 .....	34
〈표 II-7〉 개정 GPA에서의 우리나라의 양허 변경 내용 .....	36
〈표 III-1〉 비엔나협약 제30조 .....	63
〈표 III-2〉 특정물품조달 특례규정 조문별 특정조달 특례규정 통합 가능 검토 ...	67
〈표 III-3〉 특정물품조달 특례규칙 조문별 특정조달 특례규정/규칙 통합 가능 검토 ..	72
〈표 III-4〉 특정물품조달 특례규정 별표1 .....	77
〈표 III-5〉 특정물품조달 특례규정 주요 조문 .....	78
〈표 IV-1〉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양허금액 표기 사례 .....	81
〈표 IV-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83
〈표 IV-3〉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개정(안)(조문 신설) .....	84

---



---

# I. 연구개요

---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2016년 1월 14일 개정된 정부조달협정이 발효되어 우리나라는 새로운 국제조달규정을 적용받게 됨
  - 우리나라는 2015년 12월 개정 정부조달협정 발효를 위한 수락서를 WTO에 기탁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개정된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음
  - 정부조달협정은 세계무역의 자유화 및 확대를 기본이념으로 내국민 대우 및 무차별, 투명성을 원칙으로 하며, 상호주의에 기초하고 있음
  - 더불어 개발도상국에 대한 배려 및 분쟁해결과 관련한 국제적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음
  - 개정된 정부조달협정 발효는 새로운 국제조달규정에 따라 국내 조달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새로운 국제조달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정부조달협정 개정의 내용을 국가계약제도 및 계약법령에 반영해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2016년 1월 14일 발효된 정부조달협정 내용을 국가계약제도 및 계약 법령에 반영
- 개정된 정부조달협정 기준에 따라 새롭게 선정된 국제입찰 적용기관의 국제조달 업무 적정성 제고 방안 마련

##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 가. 제안요청 내용

- 발주기관 제안요청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따른 연구수행 방법을 제시하고자 함

- (1) 정부조달협정의 개요 및 최근 개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도출
  - 정부조달협정의 개요 및 개정 협정의 발효 배경 정리
  - 개정 정부조달협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도출
    - 협정문안 주요 개선내용, 국가별 양허안 비교분석, 우리나라의 양허 확대 범위 등
- (2) 정부조달협정 개정 내용을 계약법령에 반영 및 정비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 정비
  - 특정물품 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 정비
  - 특정조달 및 특정물품조달 등 법령 통합 정비 여부 검토
- (3) 국제입찰 대상 기준 변경에 따른 고시 정비 및 근거 마련
  - 국제입찰 대상 기준인 WTO 및 양자 간 양허대상 금액,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구분을 명확히 한 고시금액(고시) 정비
  - 기타공공기관인 산업은행 및 기업은행이 국제입찰 시 적용 법령에 대한 근거 마련

### 나. 연구방법

- 관련 문헌 연구 및 법률 전문가 자문 수행

---

## Ⅱ. 개정 정부조달협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

### 1. 정부조달협정의 개요 및 개정 협정의 발효 배경

#### 가. 주요국과의 통신장비 조달시장 개방

##### 1) (전기통신장비에 관한) 한·미 정부조달협정

○ 한국과 미국 정부 간 전기통신장비 관련 정부조달은 쌍무협정으로, 한·미 간 통신 양해각서가 최종 교환된 것은 1992년 3월 6일이지만 통신제품 및 장비조달에 관해서는 이미 1990년 2월 15일 체결된 「정부조달에 관한 한·미 양해사항」(ROU)에 의해 한국통신은 미국 기업에 내외국인 간에 차별 없는 조달절차를 적용하기로 합의함

- 한·미 통신 ROU는 1992년에 발효(단, 정부조달부문은 1993년 발효)됨. 그 내용은 1994년 1월부터 부가통신서비스 100% 외국인투자 허용, 통신위원회 설립, 표준제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보장, 형식승인절차의 간소화, 통신기기 관세를 1992년까지 8%로 인하, 정부조달(대상기관: 한국통신과 조달청, 대상품목: 13만SDR<sup>1)</sup> 이상의 일반통신제품 및 통신망장비, 조달절차: 일반통신장비는 GPA 준용), 절차 제정(예외품목: 중소기업, 상이군경, 국가유공자, 재향군인단체, 한국통신 현지기관의 조달)으로 됨
- 1992년 2월에는 한·미 통신협상이 타결되고 협상 내용에 전기통신

---

1) SDR(Special Drawing Rights)은 IMF가 개발한 통화단위로 모든 통화의 가중평균을 나타내며, IMF 회원국들이 외환위기 등에 처할 때 담보 없이 인출할 수 있는 권리로 흔히 IMF의 특별인출권이라 함

정부조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미국에 대한 통신장비 조달 시장에 대한 개방이 이루어짐

- 본래 한·미 간에 통신협상이 진행되고 통신장비 조달시장이 개방된 것은 1989년 2월 미국 정부가 한국을 자국의 「종합무역법」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이루어졌는데, 한국이 미국의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것은 1988년도 미국의 「종합무역법」 통신관계조항의 규정에 해당하였기 때문임
- 이러한 지정요건 중에서 한국을 조달시장 개방과 관련된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중요한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먼저 한국의 통신시장은 한국 정부의 정책, 관행, 기타 행위에 의하여 외국기업에 공개되어 있지 않으며, 그 정도가 심하다고 보았음. 즉, 통신기기의 정부 및 국영기업체에서의 구매, 통신장비의 기준, 통신기기의 시험, 관세 VAN 서비스 등 전반에 걸쳐서 외국기업(미국기업)에 극히 불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본 것임
  - 또한 한국 시장의 잠재적 규모에 대한 평가 때문이었음. 즉, 미국은 한국이 현재와 같은 시장에 대한 규제가 해제되고 전기통신사업의 민영화와 통신시장의 자유화가 추진되면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았음<sup>2)</sup>
  -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여 1989년과 1990년에 걸쳐 한국과 미국의 통신부문 시장개방 협상이 이루어졌으며, 정부조달과 관련해서는 한·미 ROU가 그 결과로 도출된 것임. 그러나 한·미 ROU는 상호 호혜적인 차원에서 협정을 체결한 것이 아니며 한국통신만 양허대상으로 조달절차와 불만처리 절차를 규정해 놓고 있음

---

2) 강신원, 「통신사업과 국제조달협정」, 『대외경제연구』, 2001년 제2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pp.200~201

〈표 II-1〉 한·미 ROU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조달원칙	- 국내외 비차별적인 조달절차 시행 - 국산화, 기술이전 등의 offset 부과 금지 - 입찰 이의처리 절차 수립 시행
개발대상기관	- 조달청, 체신부(정보통신부), 한국통신
개방시기	- 일반통신제품: 1992년 - 통신망 장비: 1993년
적용절차	- 일반통신제품: GATT 정부조달협정 절차 적용 - 통신망 장비: 통신망 장비조달 절차 적용
제품구분	- 일반통신제품: 통신망이 아닌 것 - 통신망 장비: 교환장비, 전송장비, 무선장비, 케이블 등

- 그 후 미국은 1996년 7월 한국을 우선협상대상국(PFC)으로 다시 한 번 지정함으로써 국내 통신장비시장의 광범위한 개방을 요구하기도 하였음
- 1996년 한·미 통신협정 내용은 첫째, 한국정부는 장비 구매과정에서 국내제품을 우대하도록 한국통신에 요구하거나 장려하지 않는다. 둘째, ATM기술과 같은 첨단 장비의 구매를 포함한 향후 한국통신의 구매과정에 있어서 미국 공급자와 국내 공급자에 대해 동등한 대우를 한다. 셋째, 한국통신의 통신장비 구매과정에서 기술이전 요구를 하지 않는다. 넷째, 납품업체가 한국통신에 제출한 영업비밀 혹은 전유정보에 대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다섯째, 한국통신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기술규격을 입안, 채택, 적용하지 않는다. 여섯째, 한국통신은 (i) 디자인이나 서술적인 특성보다는 성능에 따라, (ii) 국제표준이 있을 경우에는 국제표준에 근거하여 기술규격을 제정한다. 마지막으로 한국통신의 통신장비 구매과정에서 불필요한 전유정보(사양서 또는 설계도면 포함) 제출요구를 금지한다는 등의 내용임

## 2) (전기통신장비에 관한) 한·EU 정부조달협정

- 한·미 협상을 통해 한·미 간에는 통신기기 시장의 상호개방이 이루어졌으나 한국과 EU 간 통신시장 개방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양측은 상호 통신장비 조달시장에의 제도적 진입장벽을 보유하고 있었음
  - 즉, 한국은 상호호혜적인 협정이 있는 국가의 기업에만 한국통신 조달시장을 개방한다는 원칙하에 양자협정이 있는 미국에 대해서만 시장접근을 보장하여 왔음
- 따라서 EU 측은 EU에 대해서도 미국과 동등수준의 통신조달시장 상호개방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한-EU의 정부조달협정은 1996년 11월 협정에 가서명하였으며, 1997년 10월 29일 정식협정이 체결되었고, 같은 해 11월부터 발효되었음
- 양국간 협정의 명칭은 「전기통신 조달에 관한 대한민국과 구주연합간 협정」(Agreement on telecommunications procur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European Community)이며, 서문에서는 WTO 정부조달 협정을 통한 공공조달시장 자유화와 통신서비스 자유화에 관한 양 체약국의 내용이 제시되었음
- 동 협정의 목적은 양 당사자의 공급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부속서 I (“통신사업자”)에 기재된 통신사업자들의 제품과 부수적 서비스 조달에 있어 상호적이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접근을 보장하는 것임
- 한편 동 협정은 연간 45만SDR 이상의 전기통신제품 구매 시 적용되었음

〈표 II-2〉 한·EU 통신협정 주요 내용

한·EU 통신협정 주요내용	
양허기관의 범위	- EU: 15개 회원국 16개 통신사업자 - 한국: 한국통신
적용대상품목	- 전기통신제품(건설서비스, 일반제품은 제외)
양허하한선	- 한국 측은 WTO/GPA의 일반제품의 양허수준인 45만SDR, EU는 EC공공조달지침의 역내기준인 60만ECU(52만SDR) 적용
적용예외품목	- EU: 완전하고도 효과적인 경쟁상태에 있는 서비스분야의 제품 - 한국: 중소기업 대상의 수의계약품목, 인공위성(WTO 정부조달 협정 체결이후 5년간)
조달절차 및 이의신청 절차	- WTO/GPA의 협정을 공통적으로 준용하되, 한국통신은 현재 운용 중인 조달규정을 적용하고, EU는 내부지침상의 조달지침 적용 - 협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신속한 협의 및 분쟁 해결절차 마련
협의 및 분쟁해결절차	- 협정의 범위를 벗어난 법령 및 관행(Non-violation)에 대해서는 적용 예외
Buy-EU 조항	- EC공공조달지침 제36조의 적용 배제

### 3) (전기통신장비에 관한) 한·캐나다 정부조달협정

- 캐나다는 우리나라 통신조달시장에서의 무차별대우를 보장받기 위하여 통신조달시장 개방을 제의하였는데, 이는 이미 한국이 미국 및 EU와 통신조달과 관련한 협상을 통하여 이들 국가들에게 무차별대우를 부여하게 된 것에 자극받은 것임
- 양국간 협정의 명칭은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간의 통신장비 조달에 관한 협정」(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Canada on the procurement of telecommunications Equipment)임(1998.7. 체결)
- 동 협정의 전문에서는 WTO 정부조달협정, 정보기술제품의 교역에 관한 각료선언(ITA) 등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의무를 재확인하고, 관련 국제협정에 따라 양국의 통신장비 정부조달 및 기본통신서비스 시장을

외국과의 경쟁에 있어 개방화한다는 입장이 담겨져 있음

- 협정의 목적은 협정이 적용되는 대상기관들에 의한 조달에 있어 양 당사자의 통신장비 제조업체와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상호적이고 투명하며 비차별적인 접근을 허용하는 것임. 동 협정은 연간 13만SDR 이상의 전기통신제품 구매 시 협정을 적용하게 되었음

〈표 II-3〉 한·캐나다 통신협정 주요 내용

한·캐나다 통신협정 주요내용	
양허기관 및 적용대상품목	- 양허기관: 한국은 한국통신, 캐나다는 89개 연방정부기관(한국통신 민영화시 협정 적용대상기관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을 side letter로 작성) - 적용대상품목: 연간 구매액이 13만SDR(약 2억 2천만원) 이상인 통신제품(Goods) 및 부수적 서비스
원산지 규정	- 기본원칙을 부속서로 규정하고, 향후 WTO 통일원산지규정이 마련될 경우 이를 적용
조달원칙	- 상대국 공급자에 대하여 내국인 및 비차별 대우
조달절차	- WTO/GPA(정부조달협정)상 조달절차 내용을 적용 - 자격심사, 입찰서 및 낙찰 평가에 있어서 대응구매 금지 - 효율적인 통신망의 운용 및 유지보수를 위해 일정한 조건하에 입찰참가자 자격제한 가능
이의신청 절차	- 입찰참가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 협의 및 분쟁해결 -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협정 이행 및 해석문제 관련 협의 가능 -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 실패시 중재재판 청구 가능
협정 발효 및 탈퇴	- 양국이 비준원료를 상호 통보한 날의 다음달 1일부터 발효되며, 탈퇴는 통보 6개월 후에 발효

#### 나. 1994 WTO 정부조달협정 가입

##### 1) 협정 성립배경

- 정부조달 관행에서 존재하는 차별행위를 규제하고 국제조달시장의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1979년 동경라운드에서 복수국 간 협정으로 성립
  - 정부조달은 현대에 와서 행정의 비대화와 함께 고도로 발달된 행정적 집행내용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그 수요도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 일상적이고 반복적 수요에 의한 단순물품의 조달에서부터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특수한 서비스 구매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 규모가 대략 각국 GDP의 10~15%에 달함

- 정부조달의 자유무역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1940년대 국제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 ITO) 설립 추진 당시에도 시도되었는데,<sup>3)</sup> ITO 협상 초기에는 정부조달이 ITO 협정의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동의하였으나 협상이 진행되면서 오히려 정부조달은 최혜국대우 원칙과 내국민대우 원칙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조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후 1947년 GATT 성립 과정에서 ITO 협상 시 제기된 정부조달 관련 내용들이 반영되었음
- 즉, 국내 조세제도와 규제에 대한 내국민대우원칙을 규정한 GATT 제III조 제8항 (a)에서 정부의 고유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조달을 GATT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국영기업을 다루는 GATT 제XVII조 제2항에서도 국영기업의 조달이라도 정부의 고유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조달은 역시 비차별 원칙에서 제외시켰고, 정부조달에서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국방·안보 관련 조달의 경우, GATT 제XXI조 안보상의 예외규정에 의해 GATT 내국민대우 원칙의 예외로 명시되었음
- 1979년에 처음 성립된 정부조달무역 국제협정이 GATT 정부조달협정(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인데,<sup>4)</sup> 이후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결과에 따라 WTO 정부조달협정(WTO Agreement

---

3) Blank, Annet and Marceau, Gabrielle, "The History of Government Procurement Negotiation Since 1945," *Public Procurement Law Review*, vol.5, 1996, p.79.

4) Blank, Marceau(1996), 각주 참조 p.4, pp.97~98.

on Government Procurement: 이하 “GPA”라 함)이 복수국 간 무역 협정의 형태로 창설<sup>5)</sup>되어 1996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음

- 동 (구)정부조달협정은 23개 회원국이 참여하였고, 1987년 이후 협정개정을 추진하여 1993 UR협상 타결과 더불어 확정된 것임
- 동 협정이 적용되는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정부투자기관이며,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구매도 정부조달의 범주에 포함되어 WTO 체제하에서 정보통신을 포함한 정부조달시장이 1997년부터 개방됨

## 2) 협정 주요 내용

### (1) 내국민대우와 비차별 원칙

- 정부조달협정의 적용을 받는 정부조달에 관한 법규, 규정, 절차 및 관행과 관련하여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물품, 서비스 및 동 물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즉시 무조건적으로’ (a) 국내물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부여되는 대우, (b) 다른 당사국의 물품, 서비스 및 공급자에게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하여야 하며, 자국 조달기관이 (a) 외국인과의 제휴 또는 외국인 소유의 정도를 기준으로 한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를 다른 국내에 설립된 공급자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하고, (b) 다른 당사국이 원산지인 물품 및 서비스를 공급받아 재공급하는 자국 내 공급자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함(GPA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 다만 GPA와 GATS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GPA 제3조 제3항을 추가함.  
이 GPA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 원칙은 “수입 시

---

5) GPA는 다른 WTO 협정과는 달리, 다자간(multilateral)협정이 아닌 복수국 간(pluri-lateral)협정으로, 협정에 가입한 일부 WTO 회원국만이 협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WTO GPA에 가입한 WTO 회원국은 GPA 부록에서 양허한 물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최혜국대우 원칙, 내국민대우 원칙, 시장접근의무를 준수해야 하나, GPA에 가입하지 않은 회원국은 이러한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다.

또는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관세 및 모든 종류의 과징금, 그러한 관세 및 과징금의 부과방법, 다른 수입규정 및 절차 그리고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정부조달에 관한 법률, 규정, 절차 및 관행 이외에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GPA 제3조 제3항의 취지는 서비스 정부조달의 방법과 절차만을 GPA가 규정하고, 서비스 관련 시장접근은 GATS의 양허사항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함<sup>6)</sup>

## (2) 투명성 원칙

- GPA 제19조 제1항은 “당사국이 정부조달에 관한 모든 법률, 사법적 판결, 행정적 결정 등을 공표한다.”는 투명성 원칙을 천명함. 투명성 원칙은 정부조달법규의 자의적 해석 및 적용을 방지함으로써 이를 무역장벽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부조달규범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
- 또한 각 당사국의 조달기관은 낙찰 후 72일 이내에 낙찰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공표하여야 하며(GPA 제18조),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달에 관한 통계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정부조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GPA 제19조)

---

6) Blank, Annet and Marceau, Gabrielle, “A History of Multilateral Negotiations on Procurement: from ITO to WTO,” In Hoekman, Bernard M, Mavroidis, Petros C.(Ed.), *Law and policy in public purchasing*,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7.(양준석·김홍률, 『다자무역 내 정부조달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p. 39에서 재인용)

- GPA 비가입국 공급업체의 경우에도 GPA 제6조(기술자격심사), 제9조(입찰초청)와 동등한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급업체 국적국이 조달절차에 있어서 조달이 진행되는 도중에 절차를 변경하지 않겠다고 보장하는 때에는 가입국 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또한 GPA 제17조에 따르면 GPA 비가입국이 이상의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그 국가의 공급업체에도 입찰을 공개하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이는 GPA 가입국들과 비가입국들의 정부조달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비가입국들의 GPA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3) 기타 규율 내용

- 1988년에 개정된 1979년 GPA가 중앙정부기관의 13만SDR 이상의 물품구매만을 동 협정의 적용대상으로 정한 반면, WTO 체제에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국영기업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양허한 기관에 의한 구매로서 각 회원국에 의해 약속된 일정 기준금액 이상의 상품, 서비스 및 건설부문의 구매를 적용대상으로 함
- GPA 제9조 제3항에 따라, 새로이 협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지방정부, 국영기업 및 협정 적용기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입찰참가 초청절차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동 협정 제9조 제5항에 따라 중앙정부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감된 통계 보고의무가 부과되도록 하였음
- 또한 도쿄라운드 GPA에서는 대응구매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았으나, GPA 제16조 제1항은 공급자와 물품 또는 서비스의 자격심사, 선정, 입찰서평가, 낙찰 등에서 대응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의적 기술규격의 운영을 통해 각국의 정부조달시장에 진입장벽을

유발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규격(Technical Specifications)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GPA 제6조)

- 한편, GPA 제5조 제1항과 제2항은 각 당사국들은 정부조달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규정, 절차의 입안과 적용에 있어 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개도국의 경제개발, 재정, 무역상의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개도국으로부터의 수입증대를 촉진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개발도상국은 협정당사국과의 협상 또는 정부조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양허기관, 물품, 서비스에 관한 내국민대우의 적용배제를 인정받을 수 있음(GPA 제5조 제3항~6항). 또한 GPA 제5조 제8항~13항은 개도국 당사국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센터의 설치,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정부조달위원회의 검토 등에 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조달절차와 관련해서는 입찰절차의 종류와 요건, 공급자의 자격심사, 예정된 조달참가초청의 방법과 조달계획공고의 내용, 선정방법 및 절차, 입찰서 제출시한 및 납품시한, 입찰설명서의 내용과 제공방법, 입찰서의 제출, 접수, 개찰 및 낙찰, 시담에 의한 입찰방법, 제한입찰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GPA 제7조~15조)
- 입찰절차에는 공개입찰(open tendering), 선택입찰(selective tendering), 제한입찰(limited tendering)이 있음. 협정은 모든 공급자가 입찰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개입찰과 초청받은 공급자만 입찰절차에 참여하는 선택입찰을 원칙으로 하지만, GPA 제15조에 규정된 10가지 엄격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한입찰을 허용함
- 한편, 이의제기 및 분쟁해결절차를 마련하여, 각 당사국은 '조달기관과 협의(consultation)하여' 조달과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고 규정함(GPA 제20조 제1항)
- 1979년 GPA 제6조 제5항은 유찰자에게 제공되어야 할 통고나 설명

이외에 유찰자가 이용할 절차의 성격을 규정하거나 구제방법 관련 규정 없이, 구매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하는 이의에 대해 심리하고 검토할 절차를 마련할 의무만을 규정하였는 데 반해, 1994년 GPA 제20조는 GPA 위반사례가 있는 경우, 물품이나 서비스공급자가 당사국의 구매기관과의 협의(consultation)를 통하거나 법원 내지 독립적 심사기구에 이의(challenge)를 제기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거나 다투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설치할 당사국의 의무와 함께, 동 이의신청절차가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 각 당사국은 공급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구매와 관련해 발생하는 동 협정의 위반혐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비차별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효과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러한 이의제기절차는 법원 또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심사기관에 의해 사법절차 및 규정된 절차에 준해 처리되어야 함(GPA 제20조 제2항, 제20조 제6항)
- 또한 GPA 이의제기절차는 사적 당사자가 국내심사 기관에 WTO 협정을 원용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적인데, 원고의 정부 재량에 의존하지 않고 공급자의 이해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는 것은 정부조달시장에서의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GPA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분쟁해결양해(DSU)’가 원칙적으로 적용됨(GPA 제22조 제1항)
- GPA는 복수국 간 무역협정이기 때문에 다른 협정과의 교차보복(cross-retaliation)은 인정되지 않으며(GPA 제22조 제7항), 이 분쟁절차는 공급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가졌던 구매와 관련해 私人이 제기 가능한 GPA 제20조상의 이의제기절차와 달리, 다른 다자협정에 관한 분쟁에서의 해결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당사국 정부가 원고나 피고가 됨

#### 4) 개방범위(coverage)

##### (1) GPA 개방범위에 대한 이해

- WTO GPA 회원국의 정부조달 시장 양허방식은 GATT와 같이 본문의 합의와 관련 정부조달시장의 양허를 부록으로 제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그 현황은 각 회원국별로 작성하여 부록 I(Appendix I)로 첨부한 다음 5건의 부속서에 담겨 있음
  - 부속서 1: 양허대상 중앙정부 조달기관 및 동 기관의 양허하한선을 기재
  - 부속서 2: 양허대상 중앙정부보다 하위에 해당하는 지방정부 조달기관 및 동 기관의 양허하한선을 기재
  - 부속서 3: GPA의 규정에 따라 조달을 실시하는 그 밖의 기관 즉, 양허대상 공기업 및 동 기관의 그 양허하한선을 기재
  - 부속서 4: GPA의 적용 대상이 되는 서비스 분야 및 그 양허하한선을 기재하였고 이는 포지티브방식 또는 네거티브방식 중 택일하여 작성할 수 있음
  - 부속서 5: 적용 대상 건설서비스 및 그 양허하한선을 별도로 기재
  - 부록(Appendix)II-IV에서는 공고명부를 제시하고 있는데 조달공고(Appendix II), 지명경쟁입찰(selective tendering)과 관련한 적격의 공급자명부(Appendix III) 그리고 적용 가능한 조달 규칙과 절차(Appendix IV) 등임
- 정부조달협정상의 개방범위는 부록 1에서 기술하고 있는 각국의 개방범위를 기준으로 결정될 문제이나, 동 부록 내용만으로 해석될 문제는 아니며 협정문상의 적용범위와 가액평가 기준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우리나라의 경우 ① 조달되는 물품 등이 양허표상의 협정적용대상인지 여부(중소기업 제품 등 수의계약 사유와 재판매용 물자 등 협정적용

제외 사유 해당 여부) ② 발주기관이 개방대상기관인지 여부 ③ 발주기관의 구매요청금액이 양허표상의 기준선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의 순서로 검토될 수 있음

- 각 회원국(조달협정 가입국)들은 부록 1에 그들의 개방범위와 협정의 비적용부문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협정 비적용 부문은 주로 주식(Note) 형식으로 부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부록 1의 부속서 1 및 2의 주식에서 재판매물자 또는 판매를 위한 상품의 생산 설비와 중소기업 제품 등 국가계약법령상의 수의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명기하고 있으므로 동 물품 및 서비스에 해당될 때는 다음 단계의 검토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국내 입찰 절차에 의해 구매·계약할 수 있음

## (2) 개방대상 기관

- 어떠한 공공조달 시행기관이 협정적용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그다음 단계로 동 기관이 양허표상의 개방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야 함. 정부조달협정 적용기관 여부는 부록 1(Appendix 1)의 부속서 1, 2, 3(Annex 1, 2, 3)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
- 동 기관명은 대체로 중앙기관 단위로 명시되어 있으나, 특정 국가에 있어서는 중앙기관의 범위를 별도로 명기하거나 중앙기관에 해당되는 기관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동 중앙기관의 명칭 아래 포함되는 산하기관의 명칭을 따로 명기하는 경우도 있음
- 정부조달협정문도 중앙기관과 산하기관의 관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본문 제1조 제1항의 주식 1에서 “본 협정의 조달기관이라 함은 그 관할기관을 포함한다”고 기술하여 특정 중앙기관이 양허(개방)되면 원칙적으로 그 관할기관이 전부 양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따라서

각국의 양허표(부속서)에 아무런 단서조항이 없이 특정 중앙기관을 양허기관으로 명기하였다면 그 소속기관 등 산하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봄

- 구매 발주기관이 개방대상기관에 해당될 경우 다음 단계의 검토가 필요한데 즉, 개방대상기관에 해당될지라도 모든 구매를 개방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음 단계로 발주기관의 구매요청규모가 일정 하한선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함

〈표 II-4〉 WTO 정부조달협정 주요 가입국 양허하한선(시장개방기준)

(단위: 만SDR)

구 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부투자기관		
	물품	서비스	건설	물품	서비스	건설	물품	서비스	건설
한국	13	13	500	20	20	1,500	45	-	1,500
미국	13	13	500	35.5	35.5	500	25만\$/40	25만\$/40	500
캐나다 <sup>7)</sup>	13	13	500	35.5	35.5	500	35.5	35.5	500
EC	13	13	500	20	20	500	40	40	500
일본	13	13	450	20	20	1,500	13	13	1,500
홍콩	13	13	500	20	20	500	40	40	500
싱가포르 <sup>8)</sup>	13	13	500	-	-	-	40	40	500
스위스	13	13	500	20	20	500	40	40	500
이스라엘	13	13	850	25	25	850	35.5	35.5	850

7) 캐나다는 지방정부와 공기업에 대하여 현재까지 개방하지 않고 있다.

8) 싱가포르는 지방정부가 없다.

## 2. 개정 정부조달협정의 개관 및 시사점

### 가. 개정 배경 및 경과

- 1994년 GPA는 협정 당사국들이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 이내에 협정의 개선과 협정의 적용을 받는 조달의 확대(이하 ‘양허 확대’)를 위한 협상을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sup>9)</sup>
- (개정 취지) GPA 회원국들은 협정의 적용범위 확대, 차별적 조치와 관행의 철폐, 협정의 단순화 및 개선 등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개정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음<sup>10)</sup>
  - 특히, 보다 많은 국가들의 GPA 가입을 촉진하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등 정부조달과 관련된 변화를 협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정 개정을 추진하였음
- 이에 따라 1997년부터 GPA 개정 협상이 시작되었으며, 2011년 12월 15일 제8차 WTO 각료회의 계기에 협상이 타결되었고, 자구 수정을 거친 GPA 개정 의정서가 2012년 3월 30일 WTO 정부조달위원회에서 채택되었음
- 개정 GPA는 1994년 GPA 당사국의 2/3가 개정 의정서 수락서를 WTO 사무국에 기탁한 날부터 30일째에 발효되게 되어, 2014년 4월 6일 대부분의 회원국에 발효되었는데, 우리나라는 국내절차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어 2016년 1월 14일 발효됨

---

9) 제24조 제7항 (b)

10) R. D. Anderson, “Renewing the WTO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Progress to Date and Ongoing Negotiations,” *Public Procurement Review* Vol. 16, 2007, pp.1~3.

## 나. 개정 주요 내용

### 1) 전문

1994년 GPA		개정 GPA	
전문		전문	
제1조	적용범위	제1조	정의
제2조	계약대상가액 산정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	제3조	안보 및 일반적 예외
제4조	원산지 규정	제4조	일반원칙
제5조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	제5조	개발도상국
제6조	기술규격	제6조	조달제도에 관한 정보
제7조	입찰절차	제7조	공고
제8조	공급자 자격심사	제8조	참가조건
제9조	예정된 조달에 대한 참가초청	제9조	공급자 자격심사
제10조	선정절차	제10조	기술규격 및 입찰서류
제11조	입찰 및 납품시한	제11조	기간
제12조	입찰 설명서	제12조	협상
제13조	입찰서의 제출, 접수, 개찰 및 낙찰	제13조	제한입찰
제14조	시담	제14조	전자경매
제15조	제한입찰절차	제15조	입찰서의 취급 및 계약의 낙찰
제16조	대응구매	제16조	조달정보의 투명성
제17조	투명성	제17조	정보의 공개
제18조	조달기관의 의무에 관한 정보 및 검토	제18조	국내적 심사절차
제19조	당사자의 의무에 관한 정보 및 검토	제19조	협정 적용범위에 대한 수정 및 정정
제20조	이의 신청절차	제20조	협의 및 분쟁해결
제21조	기구	제21조	기구
제22조	협의 및 분쟁해결	제22조	최종규정
제23조	협정에 대한 예외		
제24조	최종조항		

- 개정 GPA의 전문은 1994 GPA에는 없는, 몇 가지 새로운 목표들을 소개하고 있음. 1994 GPA가 세계무역의 자유화와 확대를 이뤄내고 세계 무역을 위한 국제적 기틀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적인 국제무역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면, 개정 GPA는 국제무역상의 이익과는 관계가 없는, 회원국의 국내적 이슈 관련 기준을 몇 가지 추가함
- 개정 GPA 전문은 공공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국가 경제의 성과를 가져오기 위한 정부조달제도의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함

- 또한 부패 문제와 이해상충,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방지할 수단으로서 정부조달 투명성의 중요성을 처음으로 소개하고 있음. 즉, 개정안 전문은 “유엔 부패방지협약과 같은 활용 가능한 국제적 수단”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투명성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에 관한 이러한 강조는 개발도상국의 공공조달 개선문제와 관련이 있음
  - 이는 계약공무원의 부패문제 척결은 개발도상국이 정부조달 분야에 있어 당면한 핵심 과제이기 때문임

## 2) 정의(제1조)

- 1994년 GPA에는 별도의 정의조항이 없고 정의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문구가 협정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어 개념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 GPA는 정의조항을 도입하여 사용자 친화성을 높였음
- 개정 GPA는 ‘국가’를 정의하면서(제1조 라호) ‘독자적 관세영역’도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외에 대외 상업적 관계와 WTO 협정의 내용을 수행함에 있어서 완전한 자치권이 있는 독자적 관세영역도 WTO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sup>11)</sup>한 WTO 협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임. 따라서 WTO 협정이나 GPA 가입은 국가 승인이나 주권 인정과는 별개임. 이에 따라 국가가 아니라 독자적 관세영역으로서 GPA에 가입한 곳으로는 유럽연합(EU), 홍콩, 대만, 네덜란드령 아루바를 들 수 있음
- GPA는 입찰과 관련된 각종 기한을 설정하고 있으나, 1994년 GPA는 그 어디에도 기한을 계산할 때 일(日)이 역일(曆日), 즉 달력상 날인지

---

11)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제12조 제1항 및 제3항

아니면 근무일인지를 규정하지 않아 해석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었음. 이에 개정 GPA는 ‘일(日)’을 ‘역일(曆日)’이라고 명시함으로써 불확실성을 제거하였음(제1조 마호)

- 개정 GPA는 1994년 GPA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전자입찰’, 특히 ‘전자경매’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 특징임(제1조 바호). 전통적인 입찰 방식은 비교적 정적인 과정으로서, 각 입찰자가 하나의 입찰서를 제출하고, 조달기관은 제출된 입찰서들 중에서 가격이나 품질 또는 사전에 결정된 기타 평가기준에 따라 최상의 입찰서를 선택하는 방식이었음. 반면에 경매는 상호작용의 과정으로, 입찰을 진행하면서 가장 유리한 조건의 입찰서가 남을 때까지 입찰자들이 자신들의 입찰서를 개선하는 경쟁을 계속하고, 조달기관은 마지막까지 남은 입찰서를 선택함으로써 가격 대비 조달의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보급으로 전자경매는 전통적인 경매처럼 당사자들을 한 장소에 모이게 할 필요없이 효과적으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게 됨. 개정 GPA는 조달의 방법으로서 전자경매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제7조 제2항 바호, 제10조 제7항 마호, 제14조). 아울러 개정 GPA는 ‘서면으로 또는 서면의(in writing or written)’를 정의하면서 ‘전자적으로 전송되고 저장되는 정보’도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전자입찰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음<sup>12)</sup>
- 개정 GPA는 ‘조치’를 “협정 적용대상 조달과 관련되는 법률, 규정, 절차, 행정지도 또는 관행, 또는 조달기관의 행위”라고 정의(제1조 차호)하고 있는데, 협정의 적용범위(제2조 제1항),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의무(제4조 제1항 및 제2항), 일반적 예외(제3조 제2항), 국내적 심사 절차(제18조), 협의 및 분쟁해결(제20조)과 같은 핵심적 조항에서 언급

---

12) 우리나라 조달청은 전자입찰 등 전자조달을 위한 「나라장터」(www.g2b.go.kr)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9월 나라장터에 역경매를 도입하였음.

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용어임. 조치를 제1조 자호와 같이 정의함으로써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와 같은 법령이나 공식적·비공식적 행정지도, 언행 또는 관행 등 형식이나 방식을 불문하고 정부나 조달기관이 GPA의 적용을 받는 조달과 관련하여 차별적이거나 보호주의적인 조치를 취하면 GPA 위반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임

### 3) 적용범위(제2조)

- 제3항은 일반적으로 GPA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조달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명시하고 있음. 부동산 취득·임차, 공무원 고용계약, 개발원조 등 국제원조를 제공하기 위한 조달, 군대 주둔이나 합작 프로젝트 체결국의 공동 이행과 관련된 조달, 국제기구 특유의 절차 또는 조건에 따르거나 GPA와 불일치하는 절차 또는 조건에 따른 국제적 공여금이나 차관 등을 재원으로 하는 조달 등이 GPA가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종류의 조달임
- 제5항은 GPA의 적용을 받는 조달기관, 즉 부속서 1~3에 기재된 기관이 GPA의 적용을 받는 조달을 직접 시행하지 않고, 부속서 1~3에 기재되지 않은 기관을 통해 조달을 하는 경우, 비차별 원칙, 조달의 수행방식, 원산지 규정, 대응구매 금지 등 제4조에 규정된 내용이 준용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GPA 적용을 부당하게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제6항은 GPA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분할 발주나 작위적인 조달가액 평가방법의 채택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제6항은 조달가액을 산정할 때 할증금, 요금, 수수료, 이자 그리고 선택권(옵션)이 있을 경우 선택권의 추가액도 조달가액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 제7항은 제6항의 GPA 적용 회피를 위한 분할 발주의 금지 규정과는

별개로 조달의 개별적인 요건 때문에 계약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된 조달가액을 합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4) 일반원칙(제4조)

- 개정 GPA는 1994년 GPA에서 개별 조문이었던 원산지규정(1994년 GPA 제4조), 대응구매(1994년 GPA 제16조) 등을 내국민대우 및 비차별(1994년 GPA 제3조) 조항과 통합하여 일반원칙 조항으로 재구성하여 사용자 친화성을 높임. 또한, 제4조는 전자조달을 수행할 경우에는 범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보안을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정보통신기술이 발전·보급된 오늘날의 흐름을 반영하는 한편, 조달이 이익상충을 회피하고 부패관행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할 것을 새롭게 규정하여 조달의 투명성·공정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
- 제2항은 1994년 GPA와 마찬가지로 외국회사가 조달기관 소속국 내 법인, 지점, 지사 등의 형태의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를 통해 응찰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해 차별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국내에 설립된 법인, 지점, 지사 등에 대해 외국인 지분이 많다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국내에 설립된 법인, 지점, 지사 등이 다른 GPA 당사국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다고 해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 규정은 많은 외국회사가 정부조달이 이루어지는 나라에 자체 지점 등을 설치하여 입찰에 참가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중요성을 가지게 되었음
- 제3항은 전자적 수단을 사용하여 조달을 수행할 경우, 즉 전자조달을 실시할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개정 GPA에서 새롭게 도입한 규정임. 전자조달에 사용되는 정보기술이나 소프트웨어가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있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입수할 수 있는 다른 정보기술이나

소프트웨어와 상호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조달 기관이 외국에서는 입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실상 국내업체를 우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음. 또한, 제3항은 인증·암호화 기술과 접수시각 설정 및 부적절한 접근 방지와 같은 메커니즘을 전자조달에 도입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전자조달의 공정성·안정성을 지향하고 있음

- 제7항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한 비차별 원칙이 관세,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는 각종 수수료, 이러한 관세 및 수수료의 부과 방식, 기타 수입 규정 및 형식상 절차, 그리고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GPA 적용대상 조달을 규율하는 것은 제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4) 조달제도에 관한 정보(제6조)

- 제1항은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공공조달과 관련된 법령, 사법적 결정,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 결정, 법령에 따라 입찰서류에 포함되는 표준 계약조항, 협정 적용대상 조달에 관한 절차 그리고 이들에 대한 수정사항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적인 종이 또는 전자 매체에 지체 없이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5) 공고(제7조)

- 1994년 GPA와 달리 개정 GPA는 공고되어야 할 정보의 내용을 추가하고, 요약공고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달예정 공고의 공표와 동시에 공표하도록 강화하였음
- 제1항은 제13조에 명시된 제한입찰<sup>13)</sup>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

13) '제한입찰'(limited tendering)은 조달기관이, 자신이 선택한 공급자를 접촉하는 조달방법을

는 부록 III에 기재된 종이 또는 전자 매체를 통해 조달예정<sup>14)</sup> 공고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각 당사국은 부록 I 부속서 1에 포함된 중앙정부기관의 경우, 외부인이 조달예정 공고에 하나의 접근창구를 통해 전자적 수단으로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한편, 부속서 2, 3에 포함된 조달기관, 이른바 지방정부기관이나 공기업 등은 이러한 의무는 없고 단지 권장을 받을 뿐이지만, 조달예정 공고에 전자적 수단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최소한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사이트에 링크를 걸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제2항은 조달예정 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를 명시하고 있음. 제2항은 1994년 GPA와 마찬가지로 조달기관의 이름과 주소, 조달기관을 접촉하고 조달과 관련된 모든 문서를 입수하는 데 필요한 정보, 이와 관련된 비용과 지불조건, 조달될 물품·서비스의 성격과 수량 등의 내용, 납품·인도 일정이나 계약기간, 입찰서 제출 주소와 마감일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7조의 조달예정 공고는 입찰 참가와 입찰서 제출 권유를 포괄하는 개념임. 다만, 제7조 제4항은 조달계획 공고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예상되는 조달계획을 미리 알리는 조달예정 공고보다 앞선 단계에서의 정보 공표에 해당함
- 제5항은 부속서 2, 3에 속하는 조달기관의 경우, 조달계획 공고의 공표로 조달예정 공고의 공표를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단, 갈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달계획 공고에 조달예정 공고에 포함되어야

---

뜻하며(개정 GPA 제2조 바호), 우리나라의 '수의계약과 비슷한 개념임. 우리나라 「특정 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 제6호는 수의계약을 "발주기관이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14) '조달예정 공고'(notice of intended procurement)는 조달기관이 공표하는 고시로서, 관심 있는 공급자로 하여금 참가 신청서, 입찰서 또는 양자 모두를 제출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뜻함(개정 GPA 제2조 카호)

할 정보가 최대한 많이 포함되어야 하고, 조달계획 공고로 공표된 조달에 관심이 있는 공급자는 조달기관에 그 뜻을 표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만 함. 조달계획 공고로 조달예정 공고를 갈음하는 이 점은 제11조 제4항 가호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전제하에 일반적으로 40일 이상인 입찰서 접수기간을 10일 이상으로 단축시킬 수 있다는 점임

## 6) 참가조건(제8조)

- 1994년 GPA와 달리, 개정 GPA는 재정적 역량 외에 법적 역량(legal capacities)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공급자가 조달계약 이행과 관련된 인·허가를 취득해야 하거나, 국내외에서 부정업자로 제재를 받아 조달에의 참가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것 등을 뜻함
- 제2항은 조달 참가조건을 설정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공급자가 참가조건을 충족하는지 조달기관이 심사할 때의 평가 요소를 명시하고 있음
- 우선, 제2항은 조달에 참가하고자 하는 공급자에게 이전에 ‘특정 GPA 당사국의 조달기관으로부터 1건 이상의 계약 낙찰 실적’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새롭게 명시하고 있는데, 그동안 낙찰 실적 요구 때문에 GPA 당사국의 공공조달 입찰에 참가조차 하지 못했던 기업들에 도움이 될 것임. 다만, 제2항은 조달요건 충족에 필수적인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관련 사전 경험’을 참가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하여 공공조달 참가 기회 확대와 무분별한 입찰 참가자를 걸러내야 할 필요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있음<sup>15)</sup>

---

15) ‘GPA 당사국 조달기관으로부터 1건 이상의 낙찰 실적’이 구체적이고 엄격한 요건임에 반해 ‘관련 사전 경험’은 이러한 실적 외에 非GPA 당사국 조달기관으로부터의 낙찰 실적, 하도급 업체로서의 계약건 참여 등도 포함할 수 있는 더 넓은 개념임

- 한편, 제3항은 공급자의 조달 참가조건 충족 여부를 심사할 때 공급자의 재정적 역량과 상업적·기술적 능력을 조달기관이 속한 당사국 내 외에서의 사업활동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GPA 당사국 A국의 조달기관이 발주하는 조달 건에 A국에서는 직접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GPA 당사국 B국의 기업이 참가하고자 할 때 A국에서의 사업활동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업의 재정적 역량이나 상업적·기술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음. 또한, 제3항은 공급자의 조달 참가조건 충족 여부를 심사할 때 조달기관이 사전에 공고나 입찰서류를 통해 명시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도록 추가적으로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제4항은 1994년 GPA에 이어 조달기관이 특정 공급자의 조달 참가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로서 파산과 허위신고를 명시하고 있음. 또한, 공급자가 중대한 범죄나 중대한 위법행위와 관련된 최종판결을 받은 경우, 공급자에게 흠이 되는 업무상 부정행위나 작위 또는 무작위를 한 경우,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를 새롭게 참가 배제 가능 사유로 추가하였음

## 7) 공급자 자격심사(제9조)

- 개정 GPA 제9조는 1994년 GPA의 제8조(공급자 자격심사), 제9조(예정된 조달에 대한 참가초청), 제10조(선정절차) 등의 일부 내용을 통합한 규정으로서, 등록제도 및 자격심사 절차, 선택입찰<sup>16)</sup>, 유자격자 명부, 부속서 2, 3 기관에 대한 특별한 유연성 그리고 조달기관의 결정에 관한

16) '선택입찰(selective tendering)은 유자격 공급자만이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조달기관으로부터 권유를 받는 조달방법을 뜻하며(개정 GPA 제2조 더호), 우리나라의 '지명경쟁입찰'과 비슷한 개념임. 우리나라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 제5호는 지명경쟁입찰을 '발주기관이 지명한 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정보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1항~제3항은 조달기관을 포함한 GPA 당사국이 관심 있는 공급자로 하여금 당사국 또는 조달기관에 등록하고 특정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록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음. 단, 여러 자격심사 절차들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과 등록제도를 유지할 경우에는 여러 등록제도들 사이의 차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아울러, 개정 GPA는 이러한 등록제도나 자격심사 절차가 GPA 당사국 공급자의 조달 참가에 불필요한 장애를 부과하려는 목적이나 효과를 갖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제4항~제6항은 선택입찰과 관련된 새로운 요건을 포함하여 몇 가지 핵심적인 요건들을 명시하고 있음
- 제4항은 조달기관이 선택입찰을 실시할 경우, 공급자의 참가 신청서 제출을 권유하는 조달예정 공고에 제7조 제2항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 중 최소한 포함되어야 할 정보와 조달기관으로부터 입찰서 제출을 권유받게 될 것이라고 통보를 받은 공급자에게 늦어도 입찰기간이 시작될 때까지는 제공되어야 할 정보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음
- 제5항은 조달기관이 조달예정 공고에서 입찰 참가가 허용될 공급자수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사실과 이러한 제한된 숫자의 공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밝히지 않는 이상 모든 유자격 공급자가 해당 조달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조달기관이 조달예정 공고에서 예고하지 않고 추후에 임의로 선택입찰을 실시하는 것을 방지하고, 선택입찰이 반드시 국내 유자격 공급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 제6항은 입찰서류가 선택입찰 조달예정 공고 공표일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 조달기관은 해당 입찰서류가 향후 선택입찰에 참가하도록 선정된

모든 유자격 공급자에게 동시에 접근이 가능하게 되도록 할 것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음

- 조달기관이 독자적인 유자격자 명부를 두고 이에 등재된 공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택입찰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명부의 존재를 암시적으로만 인정했던 1994년 GPA에 비해 개정 GPA 제9조 제7항~제11항은 유자격자 명부의 유지를 인정하면서도 명부의 운영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
- 제10항은 공급자가 유자격자 명부에 포함되고자 신청하는 것을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과 자격을 갖춘 모든 신청자를 합리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 유자격자 명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14항은 공급자가 조달 참가 신청서 또는 유자격자 명부 등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신청과 관련된 결정을 지체없이 해당 공급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8) 기술규격 및 입찰서류(제10조)

- 제4항은 제3항과 유사한 취지에서 조달 요건을 정확하게 또는 명료하게 설명할 방법이 달리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상표 또는 상호, 특허, 저작권, 디자인, 형식, 특정 원산지, 생산지 또는 공급자를 요구하거나 인용하는 기술규격을 설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제4항은 불가피하게 이러한 기술규격을 설정할 경우에는 “또는 동등한 것”과 같은 문구를 입찰서류에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달기관은 앞으로 있을 물품 또는 서비스의 조달을 추진하면서, 잠재적 입찰 참가자를 해당 조달건의 기술규격 작성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관행과 관련해 제5항은 특정 조달에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자로부터 해당 조달의 기술규격을 작성하거나 채택할 때 활용될 수 있는 조언을, 경쟁을 배제하는 효과를 갖는 방식으로 구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6항은 조달기관을 포함한 GPA 당사국이 천연자원 보존이나 환경보호 진작을 위한 기술규격을 준비·채택·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음. 이는 1994년 GPA와 비교할 때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조달 행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된 점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우선 1994년 GPA와 달리 개정 GPA 제7조 제2항에 따른 정보는 입찰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의 명단에서 제외된 반면, 조달기관이 전자적 수단으로 조달을 집행할 경우 모든 인증 및 암호화 요건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제출과 관련된 다른 요건, 조달기관이 전자경매를 실시할 경우 해당 경매의 수행규칙 등의 정보가 새롭게 추가되었음

〈표 II-5〉 입찰서류 필수 포함 사항

제10조 제7항	
가	• 조달 내용(조달될 물품·서비스의 성격 및 (추산) 수량 포함) • 요건(기술규격, 적합성 심사 인증, 계획, 도면, 지침자료 포함)
나	• 공급자 참가조건(제출 정보 및 서류 목록 포함)
다	• 낙찰 평가기준 • 여러 낙찰 평가기준 간 상대적 중요도(가격이 유일한 기준인 경우는 제외)
라	• 인증·암호화 요건 또는 전자적 수단에 따른 정보 제출 관련 기타 요건(전자조달의 경우)
마	• 전자경매시 수행규칙(평가기준 관련 입찰 요소의 확인 포함)
바	• 공개개찰시 일시 및 장소 • (적절한 경우) 입회 허용 대상자
사	• 기타 조건(지급조건, 입찰서 제출 수단에 대한 제한 포함)
아	• 물품 인도 또는 서비스 공급 일자

- 제8항은 조달기관이 조달될 물품의 인도일자나 서비스의 공급일자를 정할 때 조달의 복잡한 정도, 예상되는 하도급의 범위, 물품의 생산·반출·운송에 소요되는 시간이나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현실적인 시간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외국 공급자의 경우 합리적인 인도일자나 공급일자가 확보되지 않으면 특정 당사국의 입찰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련된 규정임
- 제9항은 조달예정 공고나 입찰서류에서 제시된 평가기준에 가격과 다른 비용 요인, 품질, 기술적 장점, 환경적 특징, 인도 조건 등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음
- 제11항은 조달기관이 입찰에 참가하는 공급자에게 제공한 조달예정 공고나 입찰서류에서 정한 기준이나 요건을 낙찰 전에 수정하거나, 공고 또는 입찰서류를 낙찰 전에 개정하거나 재발간하는 경우, 모든 수정사항이나 개정·재발간된 공고 또는 입찰서류를 서면으로 공급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때 조달기관이 참가 공급자를 알고 있으면 그러한 모든 공급자에게 전달해야 하고, 다른 모든 경우에는 원래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달해야 함. 또한, 전달 시간과 관련해서는 공급자가 입찰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달해야 함

## 9) 기간(제11조)

- 외국의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하는 공급자는 조달 실시국의 조달 절차 및 제도, 기술규격 등이 생소할 수밖에 없음. 이러한 공급자들에게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게 되면,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외국의 공급자는 해당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될 것임. 이에 GPA는 일반적으로 약 40일의 입찰서 제출기간을

허용하는 등 입찰서 준비 및 제출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러한 기간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단축이 허용됨. 개정 GPA는 1994년 GPA에 비해 기간 단축이 허용되는 사유를 확대하고 있는데, 이는 전자입찰 제도 도입이 확대된 결과이기도 함

- 그러나 제4항은 조달기관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에는 공개입찰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조달예정 공고 공표일로부터 10일 이상, 선택입찰의 입찰서 제출 마감일 공급자에게 입찰서 제출 권유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것이 허용됨. 아울러, 제5항은 조달기관이 입찰 관련 세 가지 단계에서 각각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전자적 수단 이용 계기 1건당 5일씩 제3항에 따른 마감일로부터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단, 제6항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마감일 단축이 동시에 적용되더라도 제3항에 따른 공개입찰의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조달예정 공고 공표일로부터 10일 미만, 선택입찰의 입찰서 제출 마감일이 공급자에 대한 입찰서 제출 권유 통보일로부터 10일 미만으로 단축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외는 별도로 제7항은 조달기관이 상업적 물품, 서비스 또는 이들의 조합을 구매하는 경우, 조달예정 공고와 입찰서류를 전자적 수단으로 동시에 공표하면 제3항에 따른 공개입찰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조달예정 공고 공표일로부터 13일 이상, 선택입찰의 입찰서 제출 마감일 공급자에게 입찰서 제출 권유를 통보한 날부터 13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또한, 제7항은 조달기관이 상업적 물품·서비스 입찰서를 전자적 수단으로 접수할 경우 제3항에 따른 마감일을 각각 1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음
- 제8항은 부속서 2, 3 기관이 모든 또는 제한된 숫자의 유자격 공급자를 선정할 경우, 입찰 관련 기간은 조달기관과 선정된 유자격 공급자

사이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제8항은 합의가 없더라도 해당 기간은 1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 10) 전자경매(제14조)

- 개정 GPA의 중요한 특징은 그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전자적 수단을 고려한 점임. 1994년 GPA는 서면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인 제도를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자조달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 이와 반대로, 개정 GPA는 전자적 수단 사용의 중요성을 전문에서부터 언급하고 있으며, 여러 곳에서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음
- 전자적 수단을 이용한 조달 중 제14조는 조달기관이 전자경매를 수행할 때 전자경매 개시 전에 각 참가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공되어야 할 정보는 전자경매의 자동 평가방법(입찰서류에서 제시된 평가기준에 근거하고, 순위 결정 또는 재조정에 사용되는 수리공식 포함), 입찰서 요소에 대한 최초 평가 결과(가장 유리한 입찰서에 계약을 낙찰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전자경매 수행 관련 기타 정보임

#### 11) 조달정보의 투명성(제16조)

- 정부조달 입찰결과 정보는 여러 의미를 지님. 발주처인 조달기관에는 공공목적 달성을 위한 계약 상대방을 확정하는 의미를 지니지만, 낙찰하지 못한 공급자에게는 자신이 동 입찰에서 어떠한 원인으로 실패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이면서, 현재의 실패를 거울삼아 향후 낙찰의 기회를 모색하는 데 유용한 정보의 뜻을 지님
- 제3항은 각 조달기관이 개정 GPA 적용대상 조달의 입찰 절차 및 낙찰의 서류 및 보고서(제13조에 따른 제한입찰 보고서 포함) 그리고 전자적

수단으로 수행된 개정 GPA 적용대상 조달을 적절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를 최소 3년 동안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 국가별 양허안 비교

〈표 II-6〉 개정 GPA 양허하한선 국가별/주체별 비교<sup>17)</sup>

(단위: 만SDR)

국가별	중앙정부		지방정부		기타 기관(공기업)	
	상품 및 서비스	건설 서비스	상품 및 서비스	건설 서비스	상품 및 서비스	건설 서비스
GPA 양허하한선	13	500	20	500	40	500
아르메니아	13	500	20	500	40	500
캐나다	13	500	35.5	500	35.5	500
유럽연합	13	500 <sup>1)2)</sup>	20 <sup>3)</sup>	500 <sup>1)2)</sup>	40	500
홍콩	13	500	지방정부 없음		40	500
아이슬란드	13	500	20	500	40	500
이스라엘	13	850 <sup>4)</sup>	25	850	35.5	500
일본	10	450 <sup>5)</sup>	20	1,500 <sup>6)</sup>	13	450 or 1,500 <sup>5)</sup>
한국	13	500 <sup>1)</sup>	20 or 40	1,500 <sup>4)</sup>	40	1,500
리히텐슈타인	13	500	20	500	40	500
아루바	10	400	지방정부 없음		40	500
뉴질랜드	13	500	20	500	40	500
노르웨이	13	500	20	500	40	500
싱가포르	13	500	지방정부 없음		40	500
스위스	13	500	20	500	40	500
대만	13	500	20	500	40	500
미국	13	500	35.5	500 <sup>7)</sup>	US \$25/40	500 <sup>7)</sup>

주: 1) BOT, 공공 공사, GPA양허대상 PPPs를 포함

2) 공공공사(public works concessions)조달의 경우 한국에 대해 1,500만SDR 적용

3) 캐나다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35.5만SDR 적용

4) 이스라엘은 개정 GPA 발효 6년차부터는 500만SDR 적용

5) 건축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술서비스는 45만SDR 적용

6) 건축 서비스, 엔지니어링 서비스, 기술서비스는 1,500만SDR 적용

7) 한국은 1,500만SDR 적용

자료: 개정 WTO-GPA 협정문, 각국 양허안

17) 박혜리, 「개정 정부조달협정(GPA)의 주요 내용과 정책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1., pp.6~7.

- 개정 GPA 양허하한선으로 개정 전 GPA와 별다른 차이점 없이 일반적으로 중앙기관의 상품 및 서비스는 13만SDR, 건설서비스는 500만SDR, 지방정부 상품 및 서비스는 20만SDR, 건설서비스는 500만SDR, 공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는 40만SDR, 건설서비스는 500만SDR이 적용됨
  - 모든 회원국이 국가안보와 관련된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중앙정부의 경우 대다수 기관들을 조달기관으로 양허하고 있음
- 중앙정부의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양허하한선은 GPA에서 요구되는 13만SDR을 대부분의 국가가 따르고 있음. 건설서비스의 경우 일본과 아루바가 각각 450만SDR과 400만SDR으로 개방수준이 비교적 높고, 이스라엘은 발효 6년차부터 500만SDR을 적용함을 전제로 850만SDR로 개방수준이 낮음<sup>18)</sup>
-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은 특정 국가 및 품목에 대해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공 공사(public works concessions) 조달의 경우 유럽연합은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500만SDR을 적용하는 반면, 한국에 대해서는 1,500만SDR을 적용하여 차별적 양허하한선을 설정
  - 지방정부 물품 및 서비스에 적용되는 양허하한선은 대부분 20만SDR이나 미국 및 캐나다는 35.5만SDR로 개방수준이 다소 낮음
-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은 대부분의 국가가 500만SDR로 설정한 데 반해 한국과 일본은 1,500만SDR로 개방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인데, 이에 대응해 유럽연합과 미국도 한국 건설서비스에 대해서는 높은 양허하한선(1,500만SDR)을 적용하고,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건설서비스 양허하한선이 높은 일본에 대해서는 미항공우주국, 유틸리티 관련 서비스를 양허 제외하는 등 양허범위에 제한을 둬<sup>19)</sup>

---

18) 박혜리, 앞의 자료, p.6.

19) 박혜리, 앞의 자료, p.6.

- 공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의 양허하한선은 대부분 40만SDR이나, 일본(13만SDR), 캐나다와 이스라엘(35.4만SDR)은 비교적 개방수준이 높음

## 라. 우리나라의 양허 확대 범위

〈표 II-7〉 개정 GPA에서의 우리나라의 양허 변경 내용

(단위: 만SDR)

조달 주체		양허대상 기관수 확대	양허하한선 하향 조정		
			상품	서비스	건설 서비스
중앙정부		7개 추가 양허 (35개 → 42개)	13 → 13	13 → 13	500 → 500
지방 정부	A 리스트	1개 신규양허 (15개 → 16개)	20 → 20	20 → 20	1,500 → 1,500
	B 리스트	51개 신규양허	미양허 → 40	미양허 → 40	미양허 → 1,500
기타기관 (공기업)		7개 추가양허 (18 → 25개)	45 → 40	미양허 → 40	1,500 → 1,500

주: 볼드체는 양허 변경이 이루어진 부분임

- 개정 GPA를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관, 공기업을 추가 개방하고 서비스 및 건설서비스의 양허범위를 확대함
  - 중앙정부 7개 기관(소방방재청, 방위사업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추가 양허
  - 지방정부 52개 기관(울산광역시, 51개 기초자치단체) 추가 양허
  - 공기업 7개 기관(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추가 양허
- 지방정부(기초자치단체) 물품 및 서비스 양허하한선은 40만SDR로 광역시 양허하한선(20만SDR)보다 높게 설정하였는데, 건설서비스 양허

하한선은 광역시와 지역자치단체 동일하게 설정함

- 공기업의 상품 양허하한선을 인하하였고, 미양허하였던 서비스를 신규 양허하고 양허하한선은 40만SDR로 설정함

#### 마. 시사점

- 개정 WTO GPA(이하 개정 GPA)의 국내이행입법으로 대표적인 것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을 들 수 있음
  - 전체적으로 볼 때 특례규정은 개정 GPA의 내용을 반영하면서 추가로 우리나라 정부가 체결한 FTA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그리고 특례규칙은 특례규정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특례규정을 개정 GPA와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규율방향성이 나타나고 있음
  - 개정 GPA의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임. 이처럼 특례규정에서 개정 GPA의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에도 문언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그 취지를 살리면서도 기존의 「국가계약법」 체계와 조화롭게 조문을 구성하고자 노력한 것을 볼 수 있음. 예를 들어 개정 GPA의 'limited tendering'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대응하여 규정한 것은 「국가계약법」상의 용어와 일치시키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
  - 개정 GPA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특례규정에는 제외되어 있는 내용임. 특례규정에서는 「국가계약법」에 이미 개정 GPA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들은 제외하고 있는데, 분쟁해결과 관련된 부분이 대표적인 예임
  - 개정 GPA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특례규정에는 포함되어 있는

내용임. 특례규정은 「국가계약법」과 충돌이 가능한 부분들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정가격에 관한 부분이 대표적인 예임

- 특례규정을 개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존의 규율 방향성은 그대로 유지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 GPA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추가될 필요가 있을 것임. 우선 조문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이어서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 개정(안)을 제시해 보도록 함

---

### Ⅲ. 정부조달협정 개정 내용을 계약법령에 반영 및 정비

---

#### 1.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 정비

##### 가. 정의

- 개정 GPA 제2조(정의)에서는 “전자경매란 공급자가 새로운 가격 또는 평가기준과 관련되는 입찰의 정량화할 수 있는 비가격 요소의 새로운 가치 중 하나, 또는 양자 모두를 제출하기 위한 전자적 수단의 사용을 수반하는 반복과정으로서, 그 결과 입찰서의 순위가 매겨지거나 다시 매겨지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여 전자경매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음
  - 이에 비해 특례규정은 제2조(정의)에서는 전자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제23조의 2에서 전자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전자적 수단으로 입찰참가자의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라고 전자경매를 정의하고 있음
  - 그런데 전자경매에 관한 특례규정의 내용은 전자경매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즉, 반복적인 투찰을 통한 입찰순위가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경매’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개정 GPA의 정의 내용을 특례규정 제2조에 반영하고, 뒤의 특례규정에서는 전자경매의 운영방법에 관한 내용만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행	개정
<p><b>제2조(정의)</b>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제입찰”이라 함은 내·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행하는 입찰을 말하며 수의계약을 포함한다.</li> <li>2. “특정조달계약”이라 함은 국가가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통하여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및 이 영의 규정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li> <li>3. “발주기관”이라 함은 법·시행령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li> <li>4. “일반경쟁입찰”이라 함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자격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을 말한다.</li> <li>5. “지명경쟁입찰”이라 함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지명한 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을 말한다.</li> <li>6. “수의계약”이라 함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계약을 말한다.</li> <li>7. “유자격자명부”라 함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물품·공사 및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미리 정한 후 그 자격을 갖춘 자를 기재한 명부를 말한다.</li> </ol>	<p><b>제2조(정의)</b>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7.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8. “전자경매”란 공급자가 새로운 가격 또는 평가기준과 관련되는 입찰의 정량화할 수 있는 비가격 요소의 새로운 가치 중 하나 또는 양자 모두를 제출하기 위한 전자적 수단 <u>의 사용을 수반하는 반복과정으로서, 그 결과 입찰서의 순위가 매겨지거나 다시 매겨지는 것을 말한다.</u></li> </ol>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나. 적용범위

- 개정 GPA에서 적용범위와 관련된 규정으로 제2조(적용범위)와 제3조(안보 및 일반적 예외)를 들 수 있음. 특례규정 제3조 제1항에서는 개정 GPA의 내용 및 우리나라 특유의 GPA 양허배제사유(급식에 필요한 물품 등을 조달하는 경우 등)를 반영하여 특례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들을 열거하고 있음
- 개정 GPA 제2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적용범위와 관련한 가액평가의 기준을 두고 있는데, 특례규정 제2조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특례규정 제4조에서 특정조달계약의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협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추정가격의 산정방법을 선택하거나 분할발주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정도에 머무르고 있음
  - 가액평가의 방법은 특례규정의 적용범위와 관련된 중요한 내용으로 이에 관한 개정 GPA의 내용을 특례규정에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행	개정
<p><b>제3조(적용범위)</b> ① 이 영은 국가가 체결하는 특정조달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p> <p>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무기·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 안보 또는 국방목적수행과 관련된 조달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2.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3. 자선단체·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li> </ol>	<p><b>제3조(적용범위)</b> ① 이 영은 국가가 체결하는 특정조달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p> <p>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3.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4. 삭제 &lt;2003. 8. 27.&gt;  5. 삭제 &lt;2015. 7. 13.&gt;  6. 급식에 필요한 물품 등을 조달하는 경우  7. 재판매 또는 판매에 필요하거나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공급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8.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9. 비계약적 합의 또는 자원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한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가. 재무대리 또는 예탁  나. 금융기관의 청산·관리  다. 공적 부채의 판매, 상환 및 유통  11. 개발원조 등 국제원조를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12. 합작 프로젝트 체결국의 공동 이행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절차 또는 조건에 따라 조달하는 경우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절차 또는 조건이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2012년 3월 30일에 채택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를 포함하며, 이하 “마라케쉬 정부조달협정”이라 한다)과 불합치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의 절차 또는 조건에 따라 조달하는 경우  나. 국제적 공여 또는 차관 등을 재원으로 조달하는 경우</p> <p>③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기관과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p> <p>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마라케쉬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문을 포함하며, 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협정의 내용에 따라 협정가입국(협정체결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특정조달계약의 체결이 제한되는 국가, 협정의 적용범위 및 특정조달계약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p>	<p>5.~13.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
<p>⑤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각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위임·위탁 등을 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li> <li>2.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 달성을 할 수 없는 경우</li> <li>3.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li> </ol> <p>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영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조달계약”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로 본다.</p>	<p>(신 설)</p> <p>⑦ 발주기관은 제2항에 의한 협정의 적용대상 특정조달계약인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할 때 협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추정가격의 산정방법을 선택하거나 분할발주를 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보수를 고려한 조달의 전체기간에 걸친 최대 총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할증금, 요금, 수수료 및 이자</li> <li>2. 조달이 대안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조달의 총추정가격</li> </ol> <p>⑧ 조달의 개별적인 요건이 두 건 이상의 낙찰이나 낙찰의 분할로 귀결되는 경우(이하 “반복계약”이라 한다), 총추정가격의 산정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전 12개월 또는 조달기관의 직전 회계연도 동안 낙찰된 동일유형의 물품 또는 서비스의 반복계약의 추정가격으로서 직후 12개월에 걸쳐 조달될 물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 또는 가액의 예상되는 변동을 고려하여 조정한 것</li> <li>2. 최초 낙찰 직후 12개월 또는 조달기관의 회계연도 동안 낙찰된 동일유형의 물품 또는</li> </ol>

현행	개정
	서비스의 반복계약의 추정가격 ⑨ 입찰, 할부구매에 의한 물품 또는 서비스의 조달 또는 총추정가격이 명시되지 아니한 조달과 관련한 추정가격의 산정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기한을 정한 계약으로서 가. 계약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추정가격 중 최대가액 나. 계약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총추정가격 2. 계약이 무기한인 경우, 추산 월부금에 48을 곱한 가격 3. 계약이 기한을 정한 계약이 될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2호의 규정에 따른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다. 일반원칙

- 개정 GPA에서는 제4조에서 무차별 원칙(제1항, 제2항), 전자적 수단의 사용(제3항), 조달의 투명하고 공평한 수행(제4항), 원산지규정(제5항), 대응구매의 제한(제6항), 조달에 특정되지 아니하는 조치(제7조) 등 일반원칙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특례규정 제4조에서는 무차별 원칙(제1항), 분할발주금지, 원산지, 대응구매 등의 제한, 입찰서 비밀보장(이상 제2항) 등의 일반원칙 규정을 두고 있음
- 개정 GPA 제4조 제3항에서는 전자적 수단의 사용과 관련하여 “해당 조달이 정보기술체계 및 소프트웨어로서, 일반적으로 입수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수될 수 있는 다른 정보체계 및 소프트웨어와 상호 운용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특례규정 제4조에서는 전자적 수단의 사용과 관련해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이처럼 특례규정에서 전자적 수단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조달이



현행	개정
그 비밀이 보장되도록 할 것	<p>5. 전자적 수단으로 조달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조달이 정보기술 체계 및 소프트웨어로 일반적으로 입수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수될 수 있는 다른 정보기술체계 및 소프트웨어와 상호 운용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 수행되도록 보장할 것</p> <p>③ 제1항은 수입과 관련되어 부과되는 관세 및 모든 종류의 징수금, 그러한 관세 및 징수금의 부과방법, 다른 수입규정 또는 형식상 절차 및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현정 적용대상 조달을 규율하는 조치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 한다.</p>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라. 참가조건

- 개정 GPA 제8조는 참가조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대응하여 특례규정 제9조 제1항과 제2항도 관련규정을 두고 있음
- 개정 GPA 제8조 제1항은 “조달기관은 조달 참가조건을 공급자가 관련 조달을 맡기 위한 법적·재정적 역량과 상업적·기술적 능력을 갖는 것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 중에서 법적 역량은 개정 GPA에 새롭게 포함된 것인데 이는 공급자가 조달계약 이행과 관련된 인·허가를 취득해야 하거나, 국내 외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아 조달에의 참가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의미함
- 특례규정 제9조 제1항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 외에 계약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해당 계약과 같은 종류의 계약실적,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개정 GPA 제8조 제4항에서는 파산, 허위신고, 선행 계약 또는 계약들의 실질적 요건 또는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의 중대하거나 지속적인 결함, 중대한 범죄 또는 다른 중대한 위법행위와 관련된 최종판결이 있는 경우, 공급자의 상업적 무결성에 부정적으로 반영되는 업무상 부정행위나 작위 또는 부작위, 세금체납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참가자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들 내용들은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제재사유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특례규정에서는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례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 이처럼 특례규정에서 법적 역량에 관한 부분을 보완하되, 개정 GPA의 취지에 따라 참가조건을 필수적인 것에 한정한다는 취지가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행	개정
<p><b>제9조(일반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 및 심사) ①</b>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 외에 계약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해당 계약과 같은 종류의 계약실적,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내 수주 실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p> <p><b>②</b>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유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b>②</b>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급자가 파산한 경우</li> <li>2. 공급자가 허위신고한 경우</li> <li>3. 공급자에게 선행 계약 또는 계약들의 실질적 요건 또는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의 중대하거나 지속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li> </ol>

현행	개정
<p>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유무를 심사하는 경우에 입찰공고 및 제15조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한 사항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의 국내외 사업활동에 근거하여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p> <p>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자가 입찰참가를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자격심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자격심사를 완료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4. 공급자의 중대한 범죄 또는 다른 중대한 위법행위와 관련되어 제재를 받은 경우</p> <p>5. 공급자의 상업적 무결성에 부정적으로 반영되는 업무상 부정행위나 작위 또는 부작위, 세금체납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p> <p>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유무를 심사하고 <u>지체없이</u>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유무를 심사하는 경우에 입찰공고 및 제15조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한 사항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의 국내외 사업활동에 근거하여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p> <p>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u>〈신설〉</u></p> <p>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자가 입찰참가를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자격심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자격심사를 완료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에 의한 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가 허용될 공급자 수에 대한 제한과 제한된 숫자의 공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유자격 공급자가 특정한 조달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p>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마. 유자격자명부

- 개정 GPA 제9조는 유자격자명부(multi-use list), 유자격공급자(qualified supplier), 선택입찰(selective tendering) 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데 비해, 특례규정은 제9조에서 일반적인 자격심사에 대해서, 제10조에서는 유자격자명부에 대해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간략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개정 GPA 제9조 제3항은 조달기관은 자신의 조달에 외국의 공급자가 참가하는 것에 대하여 불필요한 장애를 만드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갖는 등록제도 또는 자격심사절차를 채택하거나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례규정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개정 GPA 제9조 제4항은 선택입찰을 하는 경우 조달예정공고에 포함시킬 사항과 입찰기간이 시작될 때까지 제공되어야 할 사항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개정 GPA 제2조에서는 “유자격공급자만이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조달기관으로부터 권유를 받는 조달방법”이라고 선택입찰을 정의하고 있음
  - 이러한 선택입찰은 특례규정상으로는 제9조의 일반경쟁입찰의 범주에 포함시켜서 운영하고 있고, 이에 관해서는 제11조, 제12조의 입찰공고 관련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개정 GPA 제9조 제4항, 제6항과 같은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개정 GPA 제9조 제5조에서는 선택입찰과 관련하여 “조달기관은 조달예정 공고에서 입찰참가가 허용될 공급자 수에 대한 제한과 제한된 숫자의 공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유자격 공급자가 특정한 조달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특례규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개정 GPA 제9조 제10항은 “조달기관은 공급자가 유자격자명부에 포함될 것을 언제든지 신청하도록 허용하고, 합리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유자격공급자를 해당 명부에 포함시킨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특례규정 제10조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는데 이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개정 GPA 제9조 제14항은 “조달기관은 조달 참가 신청서 또는 유자격자명부에 포함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공급자에게 해당 조달기관의 해당 신청 또는 지원과 관련된 결정을 지체없이 통지한다”라고 규정하여 통지의 신속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비해 특례규정 제9조 제2항과 제10조 제1항에서는 개정 GPA와 달리 신속한 처리의 무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음. 이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현행	개정
<p><b>제10조(유자격자명부)</b>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기준을 매회계연도초에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수시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유자격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p> <p>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유무의 심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유자격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자격자명부상에 기재된 자가 동 명부에서 제외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b>제10조(유자격자명부)</b>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기준을 매회계연도초에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수시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유자격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p> <p>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유무의 심사결과를 신청자에게 <u>지체없이</u> 통지하여야 하며, <u>유자격공급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신속한 시간내에 모든 유자격자를 명부에 기재해야 한다.</u> 유자격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자격자명부상에 기재된 자가 동 명부에서 제외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자에게 <u>지체없이</u> 통지하여야 한다.</p>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바. 입찰공고, 기간

- 개정 GPA 제7조는 조달예정공고(제1항, 제2항), 요약공고(제3항), 조달계획공고(제4항, 제5항) 등 공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제11조(기간)는 입찰관련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례규정은 제11조(입찰공고), 제12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3조(조달계획공고)에서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개정 GPA 제7조 제3항에서는 “조달기관은 예정된 조달 건마다 쉽게 접근될 수 있는 요약공고를 세계무역기구 공식 언어 중 하나로 조달예정 공고의 공표와 동시에 공표한다”라고 하여 요약공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특례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지만, 특례규정 제8조 제2항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물 등 개정 GPA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찰공고문 하단에 기재하도록 하여 요약공고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요약공고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내용에 관한 제12조로 이동하여 규정을 두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지만, 외국어로 공고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이 핵심이기 때문에 현행처럼 사용언어에 관한 규정에서 규율하는 것이 보다 나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부분의 개정 필요성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개정 GPA 제7조 제4항은 조달기관으로 하여금 적절한 종이 또는 전자 매체에 자신의 향후 조달계획에 관한 공고를 각 회계연도마다 가능한 한 빨리 공고하도록 하여 조달계획공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례규정도 제13조에서 조달계획공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그런데 개정 GPA 제11조 제4항은 일정한 내용을 담은 조달계획의 공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40일이 아니라 10일 이상의 입찰관련 기간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에 비해, 특례규정 제11조 제3항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따라서 특례규정에 이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개정 GPA 제11조 제7항은 이 조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달기관이 상업적 물품 또는 서비스, 또는 이들의 조합을 구매하는 경우 입찰관련 기간을 13일 이상의 기간으로 줄일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비해 특례규정 제11조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보완이 필요함

현행	개정
<p><b>제11조(입찰공고)</b>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조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긴급을 요하는 경우</li> <li>2. 최근 12개월 이내에 40일 이상 제13조에 따른 조달계획공고를 한 경우</li> <li>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이하 “반복계약”이라 한다)에서 최초공고 이후에 공고를 하는 경우</li> <li>4. 유자격자명부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발주기관과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자 사이에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li> </ol>	<p><b>제11조(입찰공고)</b>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을 적기에 조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긴급을 요하는 경우</li> <li>2. 최근 12개월 이내에 40일 이상 제13조에 따른 조달계획공고를 한 경우</li> <li>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이하 “반복계약”이라 한다)에서 최초공고 이후에 공고를 하는 경우</li> <li>4. 유자격자명부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발주기관과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자 사이에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li> <li>5. 발주기관이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조달계획 공고를, 입찰공고 전 40일 이상 그리고</li> </ol>

현행	개정
<p>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5일씩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li> <li>2. 제15조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는 경우</li> <li>3.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접수하는 경우</li> </ol> <p>⑤ 제3항 및 제4항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공고기간은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없다.</p> <p>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를 한 후 그 내용에 대하여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 또는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시행령 제35조제4항·제5항을 적용한다.</p>	<p>12개월 이하 공표하였고, 해당 조달계획 공고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p> <p><u>가. 조달에 대한 설명</u></p> <p><u>나. 입찰서 또는 참가신청서의 대략적인 제출 마감일</u></p> <p><u>다. 관심있는 공급자는 자신의 조달에 대한 관심을 조달기관에 표명해야 한다는 설명</u></p> <p><u>라. 조달과 관련된 서류를 취득할 수 있는 주소</u></p> <p><u>마. 제13조에서 요구되는 입찰공고내용 중에서 입수가능한 정보</u></p> <p>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5일씩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li> <li>2. 제15조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는 경우</li> <li>3.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접수하는 경우</li> </ol> <p>⑤ 제3항 및 제4항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공고기간은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없다.</p> <p>⑥ <u>이 조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물품 또는 서비스 또는 이들의 조합을 구매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공무원은 공고기간을 13일 이상의 기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u></p> <p>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를 한 후 그 내용에 대하여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 또는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시행령 제35조제4항·제5항을 적용한다.</p>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사. 기술규격, 입찰서류

- 개정 GPA 제10조는 기술규격 및 입찰서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례규정 제13조에서 제16조까지는 이에 대응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개정 GPA 제10조 제4항은 특정 상표 또는 상호 등을 요구하거나 인용하는 기술규격을 규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이를 포함하지

않고는 조달 요건을 충분히 정확하게 설명할 방법이 달리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또는 동등한”이라는 문구를 포함시키는 전제하에 특정 상표 또는 상호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비해 특례규정 제14조 제4항은 이처럼 특정 상표 또는 상호의 사용금지 원칙이 빠진 상태에서 예외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어서 개정 GPA 제10조 제4항의 취지를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 개정 GPA 제10조 제7항은 입찰에 관한 서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으나, 특례규정 제14조는 입찰에 관한 서류의 교부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고 이러한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지는 않음

- 특례규정 제14조에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또는 제16조 제1항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언급하고 있으나,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내용이 개정 GPA 제10조 제7항의 내용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이를 명시해주는 것이 바람직함

○ 개정 GPA 제10조 제8항 및 제9항은 조달될 물품의 인도일자나 서비스의 공급일자를 정할 때에 고려할 점, 낙찰에서 평가기준을 정할 때에 고려할 요소들을 명시하고 있는 것에 비해 특례규정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 개정 GPA 제10조 제11항은 입찰에 관한 서류에 제시한 기준 또는 요건을 낙찰 전에 수정할 경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에 비해 특례규정은 이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함

- 다만, 입찰서류에 포함될 구체적이고 방대한 내용은 특례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행	개정
<p><b>제14조(기술규격)</b>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한 상표·규격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는 조달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곤란한 경우로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에 상표·규격 등을 특정하는 때에는 그 특정된 상표·규격 등과 동등이상인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입찰에 부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p> <p><b>제15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교부)</b>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14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b>제14조(기술규격)</b>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한 상표·규격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는 조달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상표·규격 등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에 상표·규격 등을 특정하는 때에는 그 특정된 상표·규격 등과 동등이상인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입찰에 부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p> <p><b>제15조(입찰에 관한 서류)</b>            ① -----            -----            -----            -----            -----            -----            -----</p> <p>〈신설〉</p> <p>②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에 포함될 내용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한다.</p> <p>특례규칙</p> <p>〈신설〉</p> <p>제3조(입찰에 관한 서류에 포함될 내용) ① 특례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입찰서류에 포함될 설명내용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달(조달될 물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및 수량을 포함하며,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산 수량을 포함한다) 및 충족되어야 할 요건(기술규격, 적합성 심사 인증, 계획, 도면, 지침자료를 포함한다)</li> <li>2. 공급자 참가조건(참가조건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정보 및 서류의 목록을 포함한다)</li> <li>3. 해당 기관이 계약을 낙찰시키면서 적용할 모든 평가기준과 그러한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가격이 유일한 기준인 경우에는 제외한다)</li> </ol>

현행	개정
	<p>4. 조달기관이 전자적 수단으로 조달을 수행할 경우, 인증 및 암호화 요건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제출과 관련되는 다른 요건</p> <p>5. 조달기관이 전자경매를 주최할 경우, 해당 경매의 수행 규칙(평가기준과 관련된 입찰 요소의 확인을 포함한다)</p> <p>6. 공개적으로 개찰할 경우, 개찰의 일시 및 장소 그리고 적절한 경우, 입찰이 허가되는 사람</p> <p>7. 기타 조건(지급조건, 그리고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것인지와 같은, 입찰서 제출 수단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다)</p> <p>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될 물품의 인도일자 또는 서비스의 공급일자를 정함에 있어서 해당 조달의 복잡성의 정도, 예상되는 하도급의 정도, 공급지점으로부터 물품을 생산하고 운송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현실적인 시간 등의 요인을 고려한다.</p> <p>③ 입찰서류에 제시된 낙찰에 적용할 평가기준은 가격 및 다른 비용요인, 품질, 기술적 장점, 환경적 특징 및 인도조건 등을 포함할 수 있다.</p> <p>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공무원은 입찰공고 또는 참가한 공급자에게 제공한 입찰에 관한 서류에 제시한 기준 또는 요건을 낙찰 전에 수정하거나, 입찰공고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수정하거나 재발간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공무원은 모든 수정사항 또는 재발간된 공고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서면으로 전달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p> <p>1. 수정 또는 재발간 당시 참가한 공급자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공무원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모든 공급자에게 전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원래 정보를 입수될 수 있게 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달할 것</p> <p>2. 공급자가 적절하게 개정 입찰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내에 전달할 것</p>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아. 전자경매

- 개정 GPA 제14조는 전자경매 시 각 참가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례규정 제23조의 2에서도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다만 특례규정의 내용이 개정 GPA의 내용에 비해 간략하므로 개정 GPA의 내용에 따라 보다 상세한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현행	개정
제23조의2(전자경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전자적 수단으로 입찰참가자의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하 이 조에서 “전자경매”라 한다)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때에는 전자경매 개시 전에 평가 기준 및 그에 따른 평가방법과 그 밖에 해당 전자경매의 수행에 관한 정보를 각 입찰참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전자경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자경매의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경매를 개시하기 전에 각 입찰참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동 평가방법(입찰에 관한 서류에 제시된 평가기준에 근거하고 해당 경매 중 순위를 자동적으로 매기거나 다시 매길 때 사용될 수리공식을 포함한다)</li> <li>2. 가장 유리한 입찰서에 근거하여 계약이 낙찰될 경우 그 입찰서의 요소에 대한 최초 평가결과</li> <li>3. 해당 경매의 수행과 관련되는 다른 관련 정보</li> </ol>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자. 자유무역협정 관련 특례 정비

- 한-칠레 FTA 등 다양한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특정조달 특례규정에서 특례적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 중 본문에서 포섭가능한 내용이 반복하여 포함되고 있음
  - 예를 들어, 특정조달 특례규정 제42조의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1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마라케쉬 정부조달협정의 협정가입국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7항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의 공급자와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정하거나 제1호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해서는 아니 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수주실적

가. 별표 1에 규정된 정부기관 …”는 내용이 있음

· 동 규정 제9조(일반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 및 심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 외에 계약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해당 계약과 같은 종류의 계약실적,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정할 수 있음.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국내 수주실적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일한 내용은 제41조 이하에서 삭제 검토 필요

현행	개정
<p><b>제43조(「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b>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페루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페루공화국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은 별표 4와 같다.</p> <p>② 한·페루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페루공화국의 공급자와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수주실적(이하 이 항에서 “정부기관등과의 계약실적”이라 한다)을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중앙관서</p>	<p><b>제43조(「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b>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페루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페루공화국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은 별표 4와 같다.</p> <p>② 한·페루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페루공화국의 공급자와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수주실적(이하 이 항에서 “정부기관등과의 계약실적”이라 한다)을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중앙관서</p>

현행	개정
<p>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정부기관등과의 계약실적이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별표 4에 따른 정부기관 2. 제4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기관</p>	<p>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정부기관등과의 계약실적이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별표 4에 따른 정부기관 2. 제4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기관</p>
<p><b>제44조(「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b>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미합중국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정부기관과 공사의 범위는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p> <p>②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17.5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미합중국의 공급자와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또는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p> <p>1. 별표 5에 따른 정부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수주실적 2. 제1호 외의 국내 수주실적</p>	<p><b>제44조(「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b>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미합중국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정부기관과 공사의 범위는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p> <p>②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17.5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미합중국의 공급자와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또는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p> <p>1. 별표 5에 따른 정부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수주실적 2. 제1호 외의 국내 수주실적</p>
<p><b>제45조(「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b> ①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콜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급식에 필요한 물품 등을 조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②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정부기관과 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각각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p> <p>③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콜 자유무역협정 제14.6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콜롬비아공화국의 공급자와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또는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적절한</p>	<p><b>제45조(「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b> ①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콜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급식에 필요한 물품 등을 조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②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정부기관과 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각각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p> <p>③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콜 자유무역협정 제14.6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콜롬비아공화국의 공급자와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또는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적절한</p>

현행	개정
<p>이행을 위하여 정부기관등과의 계약실적이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별표 7에 따른 정부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수주실적 2. 제1호 외의 국내 수주실적</p> <p><b>제46조(「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b> ①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호주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호주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혈액과 혈액제품(혈장분획제제를 포함한다)을 조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②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호주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은 별표 9와 같고, 용역 및 공사의 범위는 별표 10과 같다.</p> <p>③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제12.6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호주의 공급자와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별표 9에 따른 정부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수주실적 2. 제1호 외의 국내 수주실적</p>	<p>이행을 위하여 정부기관등과의 계약실적이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별표 7에 따른 정부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수주실적 2. 제1호 외의 국내 수주실적</p> <p><b>제46조(「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b> ①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호주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호주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혈액과 혈액제품(혈장분획제제를 포함한다)을 조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p> <p>②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호주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은 별표 9와 같고, 용역 및 공사의 범위는 별표 10과 같다.</p> <p>③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제12.6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호주의 공급자와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별표 9에 따른 정부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수주실적 2. 제1호 외의 국내 수주실적</p>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 2. 특정물품 등의 조달 특례규정·규칙 정비 또는 특정조달 규정·규칙과의 통합 여부 검토

### 가. 특정물품조달 특례규정·규칙의 의의

○ WTO의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가 WTO 정부조달협정의 당사국이 되면서 「국가계약법」의 하위법령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별도로 또 하나의 대통령령인 「특정조달 특례규정」과 그 하위 규정인 「특정조달 특례규칙」이 제정·시행되고 있음

- 그런데 우리나라는 같은 「국가계약법」의 하위법령으로서 또 다른 대통령령인 「특정물품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정물품 특례규정”이라고 한다)과 그 하위법령인 「특정물품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이하 “특정물품 특례규칙”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고 있음

○ 연혁적으로 보면, 특정물품조달계약을 규율하는 특정물품 특례규정이 먼저 등장하였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은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가 급증하기 시작한 1988년 이후에는 1970년대 후반부터 일본에 대하여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대하여도 양자 협상을 통해 매우 강력한 개방 압력을 가하였는데, 미국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분야 중의 하나가 TDx 전자교환기 등을 주축으로 하는 통신장비의 정부조달 시장 개방이었음

- 한미 양국 정부는 나름대로 치열한 줄다리기를 끝에 1990년 2월에 통신장비 조달시장 개방 협상을 타결하여 우리나라는 17만달러 이상의 통신장비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기로 하였고, 그 후에도 구체적인

개방 일정과 방법에 대해 후속 협상을 한 끝에 정부는 위 합의 사항을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약속하기에 이르렀음(동 합의서를 실무상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이라고 부르고 있음)

- 이에 따라 1991년 11월에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특례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는데, 당시 입법예고된 특례규정안은 WTO 정부조달협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1992년 1월 국무회의에는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특례규정」이라는 의안으로 상정되어 가결되었고, 1992년 1월 22일에 공포·시행되었음
- 즉, 현재의 특정물품 특례규정과 특정물품 특례규칙은 우리나라 정부가 GATT 정부조달협정 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정부조달협정의 당사국이 되기 전에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제정되었던 것이므로 특정물품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특정물품조달계약은 1990년 2월에 한미 간에 합의된 통신장비 조달대상 물품에 대한 조달 추정금액이 17만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 되는 것임<sup>20)</sup>
- 이와 같이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의 정부조달 개방 대상 물품(즉, 특정물품)에 대한 조달 계약 관련 특례를 규정한 것이 특정물품 특례규정이고, 그 이후 우리나라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과정을 거쳐서 WTO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하기로 확정되고 WTO 협정의 발효에 즈음하여 국가계약 관련 법령을 전반적으로 정비함에 따라 종래 「예산회계법」의 정부조달 관련 사항이 「국가계약법」에 편입되면서 아울러 정부조달 개방에 관한

20) 대상 계약의 추정 금액 하한선인 17만달러는 특정물품 특례규정이 최초로 시행된 1992년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재무부장관이 1억 2천만원으로 고시하였고,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은 2억 1천만원이다.

일반적인 특례규정인 특정조달 특례규정이 제정되었음

- 그 결과 특정조달 특례규정이 조달계약의 개방에 관한 일종의 일반법적인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특정한’ 물품(즉,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의 대상물품)에 국한하여 적용된 최초의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예산회계법 시행령 특례규정」은 「특정물품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으로 그 명칭이 변경된 것임

#### 나. 특정조달 특례규정·규칙과 특정물품조달 특례규정·규칙의 통합 여부 검토

##### 1) 국제협약의 법원칙

- 1969년 5월 23일 전문과 85개조 및 2개의 부속선언으로 구성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이하 비엔나협약)은 조약에 관한 조약(treaty on treaties)으로서 국제협약의 해석원칙을 선언하고 있음
- 비엔나협약 제30조제3항은 “전조약의 모든 당사국이 동시에 후조약의 당사국이나, 전조약이 제59조에 따라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시행정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전조약은 그 규정이 후조약의 규정과 양립하는 범위내에서만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표 III-1〉 비엔나협약 제30조

##### 비엔나협약 제30조(동일한 주제에 관한 계승적 조약의 적용)

- ① 국제연합헌장 제103조에 따른 것으로 하여 동일한 주제에 관한 계승적 조약의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는 아래의 조항에 의거하여 결정된다.
- ② 조약이 전조약 또는 후조약에 따를 것을 명시하고 있거나, 또는 전조약 또는 후조약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조약의 규정이 우선한다.

〈표 Ⅲ-1〉의 계속

<p>③ 전조약의 모든 당사국이 동시에 후조약의 당사국이나, 전조약이 제59조에 따라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시행 정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전조약은 그 규정이 후조약의 규정과 양립하는 범위내에서만 적용된다.</p> <p>④ 후조약의 당사국이 전조약의 모든 당사국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칙이 적용된다. (a) 양 조약의 당사국간에는 상기 3항과 같은 동일한 규칙이 적용된다. (b) 양 조약의 당사국과 어느 한 조약의 당사국간에는, 그 양국이 다 같이 당사국인 조약이 그들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한다.</p> <p>⑤ 상기 4항은 제41조에 대하여, 또는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조약의 종료 또는 시행정지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또는 다른 조약에 따른 다른 국가에 대한 어느 국가의 의무와 조약규정이 양립하지 아니하는 조약의 체결 또는 적용으로부터 그 어느 국가에 대하여 야기될 수 있는 책임문제를 침해하지 아니한다.</p>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정물품조달 특례규정·규칙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래 제정 취지대로, 1990년 2월 한·미간 통신장비 조달시장 개방 협상을 타결합의 사항을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약속한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에 근거하여 이행법규로 제정됨

<p><b>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특례규정</b></p> <p>[시행 1992. 1. 22.] [대통령령 제13570호, 1992. 1. 22., 제정]  <b>【제정·개정이유】</b></p> <p>[제정]</p> <p>◇제정이유  <u>정부조달시장에서의 내·외국인에 대한 차별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달협정의 가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통신기자재조달에 관한 한·미간의 합의(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따른 동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특정물품등에 대한 국제입찰에 있어서 예산회계법시행령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u></p> <p>◇주요골자  가. 이 령의 적용대상을 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물품과 프로그램 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그 계약가액이 일정금액이상인 계약(이하 “특례조달계약”이라 함)으로 하여 정부조달시장 개방의 진전에 따라 적용대상을 적절히 조정하도록 함(령 제2조제1호).  나. 정부조달의 범위가 국제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급증하고 조달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의 명부를 비치·활용하여 입찰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함(령 제6조).</p>
---

- 다. 예산회계법시행령상 10일 이전에 하게 되어 있는 입찰공고를 이 령의 적용을 받는 특례 조달계약에 있어서는 40일 이전에 하도록 하고, 공고내용·공고방법 및 공고문상의 사용언어등을 국제입찰의 실정에 맞도록 정함(령 제7조).
- 라.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의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경쟁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입찰자에게 낙찰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함(령 제10조).
- 마. 정부조달물품에 대한 대가지급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물품등의 선적에 정일이전이라도 신용장개설은행에 대해 물품등의 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의 외화를 예약 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대가지급의 특례를 인정함(령 제12조).
- 바. 조달절차에 관한 이의제기등의 분쟁발생시 이를 심의·조정하기 위한 특례조달분쟁심 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령 제15조 및 제16조).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하지만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과 이 후 체결된 WTO 정부조달협정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 정부조달부문의 협정 당사국(한국 vs. 미국), 양허대상(통신장비 vs. 물품 일반)이 동일하여 국제법상 선법우선 원칙 적용이 가능하여 특정물품조달 특례규정·규칙의 폐지가 가능할 여지가 있음
- 더불어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위해 특정조달 특례규정·규칙과 특정물 품조달 특례규정·규칙 내용의 양자 비교를 통해 통합 가능성 추가 검토(후술)

2) 개방조건(규정·규칙 내용) 관련 양자 검토

- 특정조달 특례규정·규칙과 특정물품조달 특례규정·규칙 각각의 조 문 구성은 다음과 같음

<p>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시행 2016. 7. 15.] [대통령령 제25847호, 2014. 12. 11., 일부개정]</p>	<p>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타법개정]</p>
<p>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p>	<p>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p>

<b>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b> <b>[시행 2016. 7. 15.] [대통령령 제25847호, 2014. 12. 11., 일부개정]</b>	<b>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b> <b>[시행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 23., 타법개정]</b>
제4조(특정조달계약의 원칙) 제5조(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 제6조(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제7조(계약방법) 제8조(사용언어) 제9조(일반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 및 심사) 제10조(유자격자명부) 제11조(입찰공고) 제12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3조(조달계획공고) 제14조(기술규격) 제15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교부) 제16조(입찰서의 제출 및 접수) 제17조(낙찰자등의 공고 및 정보의 공개) 제18조(지명경쟁입찰) 제19조(지명경쟁입찰 참가자의 지명 및 통지) 제20조(지명경쟁입찰의 공고) 제21조(지명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심사등) 제22조(일반경쟁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23조(수의계약) 제23조의2(전자경매) 제24조(계약에 관한 기록) 제25조(계약실적보고) 제26조(이의신청의 대상) ... 제39조(시행령과의 관계) 제40조(국제상관례의 적용등) 제41조(「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제42조(「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제43조(「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제44조(「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제45조(「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제46조(「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제4조(추정가액 결정) 제5조(계약의 원칙) 제6조(입찰참가자격 및 심사등) 제7조(일반경쟁 및 제한경쟁의 공고) 제8조(지명경쟁의 공고등) 제9조(입찰설명서의 교부) 제10조(낙찰자등의 고시 및 통지등) 제11조(수의계약 사유) 제12조(삭제) 제13조(계약에 관한 기록) 제14조(이의처리) 제15조(삭제) 제16조(삭제) 제17조(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과의 관계)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시행 2016. 1. 14.] [기획재정부령 제492호, 2015. 7. 20., 일부개정]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법률시행특례규칙 [시행 2013. 9. 23.] [기획재정부령 제360호, 2013. 9. 17.,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2조(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제3조(낙찰자 등 결정의 공고) 제4조(낙찰정보등의 공개범위와 공개의 예외) 제5조(지명경쟁 유자격자명부 작성의 공고) 제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한 디자인 공모) 제7조(계약에 관한 자료 등의 요구) 제8조(계약실적보고)	제1조(목적) 제2조(특정물품등의 범위등) 제3조(입찰참가자격)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및 공고) 제5조(인증공급자 명부작성의 공고등) 제6조(지명경쟁의 통지 및 공고) 제7조(입찰설명서의 내용) 제8조(우편입찰서의 보관등) 제9조(입찰서의 심사기준등) 제10조(낙찰자등의 결정의 고시사항) 제11조(삭제) 제12조(계약실적보고)

- 아래 표의 특정조달 특례규정·규칙과 특정물품조달 특례규정·규칙의 조문내용 비교 결과, 추정가격의 결정 내용 정도만 상이할 뿐 다른 내용은 매우 유사함

〈표 III-2〉 특정물품조달 특례규정 조문별 특정조달 특례규정 통합 가능 검토

조문	내용	검토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에 의하여 물품등을 조달함에 있어서의 계약사무처리등에 관하여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쟁점 없음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3. 3. 23.> 1. “특정물품등”이라 함은 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물품과 프로그램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조달”이라 함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가기관이하 “각 중앙관서”라 한다이 특정물품등을 구매(할부구매를 포함한다) 또는 임차하거나 시설등을 대여받는 것을 말한다. 3.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및 명령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1) 당해 전기통신 관련 물품, 프로그램 등은 특정조달 규율 대상 범위에 포함됨 2) 추정가액, 반복조달계약 등 적용대상 가액 산정 방식 이 특정조달 특례규정에는 부재함 3) “외국인”은 특정조달 특례 규정에서는 “협정가입국 입찰참가자”로 표현됨

〈표 III-2〉의 계속

조문	내용	검토
	<p>4. “특레조달계약”이라 함은 특정물품등의 조달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계약물품등의 조달에 부수하여 운송·하역·보험등의 용역의 제공을 수반하는 계약으로서 당해 용역의 가액이 당해 특정물품등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추정가액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계약을 말한다.</p> <p>5. “추정가액”이라 함은 특정물품등의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배정금액 및 예산산출 기초자료등에 의하여 추산한 가액을 말한다.</p> <p>6. “반복조달계약”이라 함은 특레조달계약중 동일 또는 동종물품의 조달을 위하여 동일 연도중 동일인과 두 번 이상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p> <p>7.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대한민국의 국적과 대한민국외의 국적을 이종으로 가진 자 및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을 말한다.</p> <p>8. “인증공급자명부”라 함은 물품등의 유형별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미리 정한 후 그 자격을 갖춘 자 중 입찰참가 가능한 자를 기록한 명부를 말한다.</p> <p>9. “공고”라 함은 일반경쟁 및 제한경쟁의 경우에는 입찰이 있음을 알리고 모든 유자격자의 입찰참가를 권유하는 것을 말하며, 지정경쟁의 경우에는 입찰권유와 관련없이 단지 입찰이 있음만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p>	<p>4) “인증공급자명부”는 특정조달 특레규정에는 “유자격자명부”로 표현됨</p> <p>5) 특정조달 특레규정에는 “공고”를 정의하지 않았으나 쟁점 적음</p>
<p>제3조 (적용 범위)</p>	<p>① 이 영은 특레조달계약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 외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이 영에 규정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p>	<p>1) “외국인”에 대한 비차별 대우 원칙 표현이 모든 외국인으로 확대해석의 문제 야기</p>
<p>제4조 (추정 가액 결정)</p>	<p>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특레조달계약의 체결시 추정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호의 규정에 따라 추정가액을 결정한다.</p> <p>1. 단가계약인 경우에는 당해 물품단가에 조달 예정수량을 곱한 금액</p> <p>2. 반복조달계약인 경우에는 동일 연도내에 계약할 금액의 총액</p> <p>3. 물품의 임차 또는 시설등의 대여를 위한 계약으로서 계약기간이 명시된 경우에는 총계약금액으로 하며,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월분의 임차료 또는 대여료에 48을 곱한 금액</p>	<p>1) <u>추정가액 결정기준이 특레조달 특레규정에는 부재함</u> → 개정GPA에서 상세 규정을 마련한 바, 반영해 통합화 바람직</p>

〈표 Ⅲ-2〉의 계속

조문	내용	검토
<p><b>제5조 (계약의 원칙)</b></p>	<p>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특례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국적이나 제품의 생산지등을 이유로 계약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등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계약상대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하며, 정부조달에 관한 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특정조달 특례규정 제4조 (특정조달계약의 원칙)가 대응됨</p>
<p><b>제6조 (입찰 참가 자격 및 심사등)</b></p>	<p>① 외국인의 입찰참가 자격과 그에 대한 공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1994. 12. 23, 2013. 3. 23.&gt;</p> <p>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입찰참가자격심사신청을 받아 입찰참가자격의 유무를 심사하여 그 심사 결과를 당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심사신청서가 늦게 접수되어 입찰전일까지 자격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입찰참가를 허용할 수 있다.</p> <p>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심사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동일 물품등에 대하여 다른 기관에서 행한 입찰참가 자격심사의 결과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없이 이를 적용할 수 있다.</p> <p>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자격요건의 증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인증공급자명부를 작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p>	<p>1) 특정조달 특례규정 제9조 일반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 및 심사, 제10조(유자격자명부)가 대응됨</p>
<p><b>제7조 (일반 경쟁 및 제한 경쟁의 공고)</b></p>	<p>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일반경쟁 또는 제한경쟁에 붙이고자 하는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서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따라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를당사자로서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3조제1항중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등”을 “관보 또는 간행물예외의 게재”로, 제35조제1항중 “10일이전”을 “40일이전(반복조달계약으로서 최초의 계약외의 경우에는 25일이전)”으로, 제35조제2항중 “5일까지”를 “10일까지”로 보고, 동령 제35조제2항중 재공고 입찰의 경우 “5일까지”를 “40일까지”로 본다. &lt;개정 1995. 7. 6.&gt;</p> <p>② 입찰공고내용을 수정하기 위하여 수정공고를 하는 경우와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재공고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작기에 특정물품등을 조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찰일 또는 개찰일전 10일까지 공고할 수 있다.</p>	<p>1) 특정조달 특례규정 제11조 (입찰공고), 제12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4조(기술규격)가 대응됨</p>

〈표 III-2〉의 계속

조문	내용	검토
	<p>③ 입찰공고의 내용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 법률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것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lt;개정 1995. 7. 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제적·기술적인 요구사항, 재정보증 및 공급자가 제공하여야 할 정보</li> <li>2. 입찰설명서의 교부에 관한 사항</li> <li>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2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방법</li> </ol> <p>④ 입찰공고에 있어서 특정의 상표·상호·디자인·생산지 또는 제작지등을 언급하지 아니하고는 조달하고자 하는 물품의 규격·품질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공고내용에 상표·상호·디자인·생산지 또는 제작지등을 특정하여 그 특정된 물품 또는 이와 규격·품질등이 동등한 물품에 대하여 입찰에 불인다는 뜻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 참가자는 공급하고자 하는 물품이 공고내용에 기재된 물품과 규격·품질등이 동등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은 영어·불어·스페인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고문 하단에 요약하여 게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계약의 주대상 물품의 명칭 및 수량</li> <li>2. 입찰서 제출마감일 및 입찰일</li> <li>3. 발주관서의 명칭 및 주소</li> </ol>	
<p><b>제8조 (지명 경쟁의 공고등)</b></p>	<p>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지명경쟁에 붙이고자 하는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준하여 공고하되, 그 공고내용에는 지명경쟁에의 참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입찰에 있어서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공급자명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별도로 당해 입찰에 지명될 자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희망자로부터 당해 입찰에 관한 의견이나 참가요청서등을 미리 제출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p> <p>③ 지명경쟁의 공고 및 통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1994. 12. 23, 2013. 3. 23.&gt;</p>	<p>1) 특정조달 특례규정 제18조(지명경쟁입찰), 제19조(지명경쟁입찰 참가자의 지명 및 통지), 제20조(지명경쟁입찰의 공고), 제21조(지명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심사등)가 대응됨</p>
<p><b>제9조 (입찰 설명서의 교부)</b></p>	<p>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경쟁입찰에 붙이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입찰설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입찰설명서에 대한 설명등을 요청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② 입찰설명서의 내용 및 교부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1994. 12. 23, 2013. 3. 23.&gt;</p>	<p>1) 특정조달 특례규정 제15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교부)가 대응됨</p>

〈표 Ⅲ-2〉의 계속

조문	내용	검토
제10조 (낙찰자 등의 고시 및 통지등)	<p>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의 상대자를 결정할 때에는 그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 23, 2013. 3. 23.)</p> <p>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경쟁입찰에 의한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낙찰자와의 모든 입찰자들에게 낙찰자를 결정한 사실, 낙찰자의 성명(상호) 및 주소, 낙찰금액등을 서면 또는 간행물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입찰자로부터 낙찰되지 아니한 이유 기타 당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등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p>	<p>1) 특정조달 특례규정 제17조(낙찰자등의 공고 및 정보의 공개)가 대응되나, 동규정은 수의계약 상대자 결정 다음날부터 72일 이내 공고로 규정 → 72일 이내로 조정 무방</p>
제11조 (수의 계약 사유)	<p>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4호·제5호, 동항 제6호 가목(품질경영촉진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한 한다), 동항 제7호 가목 내지 마목, 동항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수의계약 적용대상에서 제외 한다.</p>	<p>1) 특정조달 특례규정 제23조(수의계약)가 대응됨 → 시행령 제26조제1항 동항 제6호 가목, 제7호 가목 내지 마목, 제8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미 삭제됨</p>
제13조 (계약에 관한 기록)	<p>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경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찰자 및 개찰에 참여한 자의 성명</li> <li>2. 입찰자의 참가신청자격</li> <li>3. 낙찰자의 성명, 낙찰금액 및 낙찰자 결정의 이유</li> <li>4. 무효로 된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의 내용 및 무효로 된 이유</li> <li>5.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경우에는 당해 통지에 관한 사항</li> <li>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li> </ol> <p>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계약의 목적</li> <li>2. 물품의 품명·규격·수량·단가·금액등</li> <li>3. 적용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li> <li>4. 계약상대자의 성명(상호) 및 주소</li> </ol>	<p>1) 특정조달 특례규정 제24조(계약에 관한 기록)가 대응됨</p>

〈표 Ⅲ-2〉의 계속

조문	내용	검토
	5. 물품원산지의 국가명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 (이의 처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례조달계약에 있어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입찰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중앙관서의 장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조치가 있는 날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위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6. 12. 31>	1) 특정조달 특례규정 제26조(이의신청의 대상)가 대응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표 Ⅲ-3〉 특정물품조달 특례규칙 조문별 특정조달 특례규정/규칙 통합 가능 검토

조문	내용	검토
제1조 (목적)	이 특례규칙은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쟁점 없음
제2조 (특정물 품등의 범위등)	①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특례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품등은 외국과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양허되는 전기통신제품(통신망장비 기타 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 이에 부수되는 서비스 및 이들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설계서·기술서 기타 관련자료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 <개정 2003. 12. 29.>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특별한 절차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는 경우로서 당해 법령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 2. 발표에 규정된 기관외의 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이 조달하는 것 3. 유상으로 양도(가공 또는 수리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유상으로 양도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달하는 것 4.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한 남한과 북한간의 교역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 5. 별도의 차관협정에 따라 조달하는 것 6. 중요한 국가정책목표에 반한다고 인정되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것 ② 특례령 제2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국가기관”이라 함은 미래창조과학부 및 조달청을 말한다. <개정 2003. 12. 29., 2013. 3. 23.>	1) 특정조달 특례규정 제3조(적용범위)가 대응됨

〈표 Ⅲ-3〉의 계속

조문	내용	검토
<p><b>제3조 (입찰 참가 자격)</b></p>	<p>① 특례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의 입찰참가자격을 다음과 같이 한다. &lt;개정 2003. 12. 29.&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일 것</li> <li>2. 제1호외의 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자일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본사의 소재국에 입찰대상물품에 필요한 시설 및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li> <li>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본사의 소재국에서 당해 허가·인가·면허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을 갖춘 자</li> <li>다. 법인의 등기부등본(개인의 경우 신분증명서)및 본사 소재국에서의 국세완납증명서 또는 이들에 상응하는 서류를 갖춘 자</li> </ol> </li> </ol> <p>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하고자 하는 물품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외에 경영상황·경영실적 및 기술능력등을 추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정할 수 있다.</p> <p>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영상황 및 경영실적(입찰대상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설비등을 포함한다)을 설명하는 서류</li> <li>2. 최근 2년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li> <li>3. 입찰대상물품의 기술명세 및 규격에 관한 설명서</li> <li>4. 입찰대상물품의 생산에 관한 자격 및 등록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li> <li>5. 기타 물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li> </ol>	<p>1) 특정조달 특례규정 제4조(특정조달계약의 원칙)가 대응됨</p>
<p><b>제4조 (입찰 참가 자격의 등록 및 공고)</b></p>	<p><b>제4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및 공고)</b> ①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동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 각목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들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2003. 12. 29.&gt;</p> <p>②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를당사자로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신청서와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본사 소재국의 대한민국공관장, 상공회의소 기타 이에 상응하는 기관의 장 또는 공증인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lt;개정 1995. 7. 6.&gt;</p>	<p>1) 특정조달 특례규정 제9조(일반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 및 심사)가 대응됨</p>

〈표 III-3〉의 계속

조문	내용	검토
	<p>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간행물에 공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03. 12. 29., 2013. 9. 1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찰참가자격</li> <li>2. 구비서류</li> <li>3. 등록장소 및 등록기간</li> <li>4. 등록의 유효기간</li> <li>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li> </ol> <p>④ 등록신청서의 작성에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어외에 영어·불어·스페인어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b>제5조 (인증 공급자 명부 작성의 공고등)</b></p>	<p>특례령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공급자명부를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회계연도마다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간행물에 공고하여야 하며, 인증공급자명부상의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공급자가 인증공급자명부에서 제외되게 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공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lt;개정 2003. 12. 29., 2013. 9. 1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달하고자 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범위</li> <li>2. 해당 인증공급자명부의 등록조건 및 그 조건의 입증방법</li> <li>3. 인증공급자명부의 유효기간 및 등록갱신절차</li> </ol>	<p>1) 특정조달 특례규정 제10조(유자격자명부), 특례규칙 제5조(지명경쟁 유자격자명부 작성의 공고)가 대응됨</p>
<p><b>제6조 (지명 경쟁의 통지 및 공고)</b></p>	<p>① 특례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특례조달계약을 지명경쟁에 부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하고,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간행물에 공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03. 12. 29., 2013. 9. 17.&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찰참가자격기준</li> <li>2. 입찰대상물품의 품명 및 수량, 조달계약의 이행기간 및 이행장소</li> <li>3. 계약조건 설명장소</li> <li>4. 입찰서등의 접수장소 및 접수기간</li> <li>5. 입찰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li> <li>6.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li> <li>7. 기타 입찰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li> </ol>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 및 공고는 입찰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이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지명경쟁입찰대상자로서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명경쟁입찰참가승낙서를 입찰일의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p>	<p>1) 특정조달 특례규정 제19조(지명경쟁입찰 참가자의 지명 및 통지), 제20조(지명경쟁입찰의 공고)가 대응됨</p>

〈표 III-3〉의 계속

조문	내용	검토
<p><b>제7조 (입찰 설명서의 내용)</b></p>	<p>특례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설명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례령 제7조 또는 제8조에 규정된 사항</li> <li>2. 입찰대상물품의 기술명세 및 규격에 관한 설명서</li> <li>3. 계약담당공무원의 소속기관 및 그 기관의 주소</li> <li>4. 계약서 작성에 사용하는 언어</li> <li>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li> </ol>	<p>1) 특정조달 특례규정 제15조(입찰에 관한 서류의 교부)가 대응됨</p>
<p><b>제8조 (우편 입찰서의 보관등)</b></p>	<p>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우편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p> <p>② 우편입찰서가 입찰서 접수마감일시이후에 도착된 경우에는 그 도착일시 및 당해 입찰서의 접수가 무효라는 뜻을 당해 입찰참가희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1) 특정조달 특례규정 제16조(입찰서의 제출 및 접수)가 대응됨</p>
<p><b>제9조 (입찰서의 심사 기준등)</b></p>	<p>①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례조달계약 입찰서를 심사하고 낙찰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조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p> <p>② 입찰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만을 심사의 기준으로 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의 가격으로 입찰에 참가한 자 중에서 가격을 포함한 모든 조건을 가장 유리하게 제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입찰공고 및 입찰설명서상에서 이러한 결정기준을 명확히 한 경우에 한한다.</p> <p>③ 입찰서의 작성에 사용하는 언어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p>	<p>1) 낙찰 결정기준이 특정조달 특례규정에는 부재함 → 개정GPA 제15조에서 상세 규정을 마련한바, 반영하여 통합화가 바람직</p>
<p><b>제10조 (낙찰자 등의 결정의 고시 사항)</b></p>	<p>① 특례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대상자의 결정에 관하여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낙찰되거나 수의계약한 물품의 품명 및 수량</li> <li>2.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의 성명 및 주소</li> <li>3. 낙찰금액 또는 수의계약금액</li> <li>4. 계약담당공무원의 소속기관 및 그 기관의 주소</li> <li>5.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상대자의 결정절차</li> <li>6.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의 공고일자</li> <li>7.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사유</li> <li>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li> </ol> <p>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이 공개됨으로 인하여 법령의 집행을 저해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공급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거나 특정한 상업적 이익을 침해하는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고시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p>	<p>1) 특정조달 특례규칙 제3조(낙찰자 등 결정의 공고), 제4조(낙찰정보등의 공개범위와 공개의 예외)가 대응됨</p>

〈표 III-3〉의 계속

조문	내용	검토
제12조 (계약 실적 보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례조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 매분기별 계약실적보고서를 당해 분기종료 후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9., 2013. 3. 23.>	1) 특정조달 특례규정 제25조(계약실적보고), 특례규칙 제8조(계약실적보고)가 대응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2) 개방 대상기관 및 품목 관련 양자 검토

- 본래 특정물품조달 특례규정·규칙 적용 대상기관은 조달청 등 정부기관과 대한주택공사 등임
  - 본래는 한국통신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1997년 10월에 한국통신이 출자기관 전환과 함께 민영화되어 규율대상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나머지 적용 기관인 조달청, 대한주택공사 등은 현재 GPA 또는 한·미 FTA 양허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특정물품조달 특례규정·규칙만의 특별한 내용이 없음
- 현재 GPA와 한·미 FTA는 물품조달 양허와 관련하여 양허배제 품목으로 명시하지 않은 물품은 모두 시장개방을 허용하는 네거티브방식의 양허유형을 채택하고 있는데, 현재 상기 협정들의 양허내용에 전기통신제품을 양허배제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특정물품조달 특례규정·규칙이 규율대상으로 하는 모든 전기통신제품은 GPA와 한·미 FTA 양허범위로 충분히 포함됨

〈표 III-4〉 특정물품조달 특례규정 별표1

[별표] 〈개정 2003.12.29〉

특례조달계약에 의하여 특정물품등을 조달받는 기관(제2조제1항제2호관련)

1. 감사원
2. 재정경제부
3. 교육인적자원부
4. 통일부
5. 외교통상부
6. 법무부
7. 행정자치부
8. 과학기술부
9. 문화관광부
10. 농림부
11. 산업자원부
12. 정보통신부
13. 보건복지부
14. 환경부
15. 노동부
16. 건설교통부
17. 해양수산부
18. 기획예산처
19. 법제처
20. 국정홍보처
21. 국가보훈처
22. 국세청
23. 관세청
24. 조달청
25. 대검찰청
26. 병무청
27. 농촌진흥청
28. 산림청
29. 중소기업청
30. 특허청
31. 대한주택공사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3) 개방 대상 양허하한선 양자 검토

- 특정물품조달 특례규정·규칙 적용 양허하한선은 13만SDR 이상의 일반통신제품 및 통신망장비인데, 이는 GPA 물품구매 양허하한선(13만 SDR), 한·미 FTA 정부조달부문 물품구매 양허하한선(1억원) 범위로 볼 때, 특정조달 특례규정·규칙상의 양허하한선만으로 충족된다고 할 수 있음
- 오히려, 특정물품조달 특례규정·규칙은 1993년 발효된 「(통신분야)정부조달에 관한 한·미양해사항」(ROU)의 이행법규의 성격으로 제정되었는데, 현재 동 규정·규칙의 적용 대상의 명확성이 부족한 측면이 존재함

〈표 III-5〉 특정물품조달 특례규정 주요 조문

<p><b>제2조(정의)</b>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lt;개정 1994. 12. 23., 2008. 2. 29., 2013. 3. 23.&gt;</p> <p>1. “특정물품등”이라 함은 현금 및 유가증권을 제외한 물품과 프로그램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p> <p>7.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대한민국의 국적과 대한민국의 국적을 이중으로 가진 자 및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을 말한다.</p> <p><b>제3조(적용범위)</b> ① 이 영은 특례조달계약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 외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이 영에 규정하는 것과 동등한 대우를 보장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영을 적용한다.</p> <p><u>특정물품조달 특례규칙</u></p> <p><b>제2조(특정물품등의 범위등)</b> ① 특정물품등의조달에관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특례규정(이하 “특례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품등은 외국과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양허되는 전기통신제품(통신망장비 기타 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 이에 부수되는 서비스 및 이들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설계서·기술서 기타 관련자료를 말한다)로 한다.</p>
---

- 즉,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서 외국인에 대한 내국민대우 원칙을 규정하면서 규칙 제2조제1항은 “특정물품등은 외국과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양허되는 전기통신제품”라고 하는데, “외국과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양허”의 구체적 내용이 특정조달 특례규정에서 정부조달협정, 한·미 FTA 등 구체적 협정을 열거하고 있는 것과 달리, 외국 의 범위가 특정되지 못하고 있어 혼란이 야기됨

#### 4) 소결

- 이상의 검토 결과, 특정물품조달 특례규정·규칙은 새로이 체결된 GPA 및 우리나라와 미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이행법규인 특정조달 특례규정·규칙으로 충분히 포섭가능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현재의 특정물품조달 특례규정·규칙을 폐지하고, 특정조달 특례규정·규칙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임
- 다만, 부칙으로 기존 특정물품조달 특례규정·규칙의 적용범위에 해당 하는 특정물품등 외국과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양허되는 전기통신제품 (통신망장비 기타 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 이에 부수되는 서비스 및 이들과 관련되는 소프트웨어(프로그램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설계서·기술서 기타 관련자료를 말한다)의 경우도, 특정조달 특례 규정·규칙이 적용됨을 부기할 필요성이 있음

## IV. 국제입찰 기준금액 고시 정비 및 기타공공기관 국제입찰 근거 마련

### 1. 국제입찰 기준금액 고시 정비

○ 국제입찰의 기준금액은 2년마다 기획재정부 고시로 아래와 같이 공표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고시금액을 말한다.)

○ 물품 및 용역: 2억 1천만 원

○ 공사: 81억 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8천만 원

○ 공사: 81억 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1억 6천만 원

○ 공사: 81억 원

...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및 용역: 6억 5천만 원

○ 공사: 244억 원

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7억 3천만 원

○ 공사: 244억 원

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

○ 물품: 6억 5천만 원

○ 공사: 244억 원

...

**3.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가.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

○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 2억 1천만 원

- 상기 국제입찰의 기준금액 고시 내용을 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좀 더 간략히 공표하는 내용 검토 필요

〈표 IV-1〉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양허금액 표기 사례

(단위: 미 달러)

무역협정	공급 계약 (금액 이상)	서비스 계약 (금액 이상)	건설 계약 (금액 이상)
WTO GPA	203,000	203,000	7,804,000
FTAs			
미-호주 FTA	70,079	70,079	7,804,000
미-바레인 FTA	203,000	203,000	9,110,318
CAFTA-DR(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70,079	70,079	7,804,000
미-칠레 FTA	70,079	70,079	7,804,000
미-모로코 FTA	203,000	203,000	7,804,000
NAFTA			
캐나다	25,000	70,079	9,110,318
멕시코	70,079	70,079	9,110,318
미-오만 FTA	203,000	203,000	9,110,318
미-페루 FTA	203,000	203,000	7,804,000
미-싱가포르 FTA	70,079	70,079	7,804,000
이스라엘무역법	50,000	-	-

자료: FAR 25.402(b)

## 〈우리나라 양허금액 고시 표기 예시(안)〉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단위: 천만원)

무역협정	공급 계약 (금액 이상)	서비스 계약 (금액 이상)	건설 계약 (금액 이상)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sup>1)</sup>	21	21	810
자유무역협정(FTA) 정부조달부문			
한국-칠레 FTA	8	8	810
한국-싱가포르공화국 FTA	16	16	810
한국-페루 FTA	15	15	810
한국-미합중국 FTA	10	10	810
한국-호주 FTA	21	21	810
한국-캐나다 FTA	10	10	810
한국-뉴질랜드 FTA	21	21	810
한국-콜롬비아 FTA	11	11	810
한국-중미공화국 FTA	21	21	810

주: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고시금액을 말함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단위: 천만원)

무역협정	공급 계약 (금액 이상)	서비스 계약 (금액 이상)	건설 계약 (금액 이상)
세계무역기구 정부조달협정 <sup>1)</sup>	65	65	2,440
자유무역협정(FTA) 정부조달부문			
한국-칠레 FTA	73	73	2,440
한국-싱가포르공화국 FTA	65	65	2,440
한국-페루 FTA	65	65	2,440
한국-호주 FTA	73	73	2,440
한국-콜롬비아 FTA	65	65	2,440
한국-중미공화국 FTA	65	65	2,440

주: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고시금액을 말함

## 2. 기타공공기관 국제입찰 법적 근거 마련 검토

- 현재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기타공공기관이 우리나라 GPA 양허에 포함되어 있으나, 동 기관 관련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는 GPA 적용에 따른 국제입찰 운영 근거가 미비되어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의 경우, 아래와 같은 규정을 통해 GPA 양허 공기업 등에 대한 국제입찰 운영 근거가 존재함

〈표 IV-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p>제4조(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범위) ① 별표 1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별표 2에 해당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lt;개정 2009. 3. 5., 2013. 11. 18., 2014. 8. 26.&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판매·재판매에 필요한 물품 또는 용역이나 판매·재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li> <li>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li> <li>3.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라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li> <li>4.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가 증전기 품목 중 「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의 제 8504호, 제8535호, 제8537호 및 제8544호에 해당하는 품목을 구매하는 경우</li> <li>5. 삭제 &lt;2014. 8. 26.&gt;</li> <li>6. 국가안보 또는 국방 목적 수행과 관련된 조달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7. 공공의 질서·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8. 자선단체, 장애인이나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li> <li>9.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li> <li>10. 부동산의 취득 및 임차나 비계약적 합의 또는 지원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li> <li>11. 재무대리 또는 예탁, 금융기관의 청산·관리나 공적부채 관련 서비스를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li> <li>12. 개발원조 등 국제원조를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li> <li>13. 합작 프로젝트 체결국의 공동 이행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절차 또는 조건에 따라 조달하는 경우</li> <li>14. 국제기구의 절차 또는 조건에 따르거나 국제적 공여 또는 차관 등을 재원으로 조달하는 경우로서 그 절차 또는 조건이 정부조달협정등과 불합치하는 경우</li> </ol>
--

〈표 IV-2〉의 계속

<p>② 제1항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을 준용한다.</p> <p>③ 국제입찰의 이행에 따른 공표사항은 정부조달협정등에서 정한 출판물에 공고하여야 한다.</p> <p>④ 기관장 또는 제7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 계약 사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다.</p>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에도 GPA 적용 기관 간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와 동일한 내용의 “국제입찰에 의한 기타공공기관 조달계약의 범위” 규정 마련 필요

〈표 IV-3〉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개정(안)(조문 신설)

<p>제○○조(국제입찰에 의한 기타공공기관 조달계약의 범위) ① 별표 1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은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별표 2에 해당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기타공공기관 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판매·재판매에 필요한 물품 또는 용역이나 판매·재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li> <li>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li> <li>3. 「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라 농·수·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li> <li>4. 공무원을 고용하는 경우</li> <li>5. 국가안보 또는 국방 목적 수행과 관련된 조달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6. 공공의 질서·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li> <li>7. 자선단체, 장애인이나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li> <li>8. 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li> <li>9. 부동산의 취득 및 임차나 비계약적 합의 또는 지원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li> <li>10. 재무대리 또는 예탁, 금융기관의 청산·관리나 공적부채 관련 서비스를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li> </ol>
---

〈표 IV-3〉의 계속

11. 개발원조 등 국제원조를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12. 합작 프로젝트 체결국의 공동 이행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절차 또는 조건에 따라 조달하는 경우
  13. 국제기구의 절차 또는 조건에 따르거나 국제적 공여 또는 차관 등을 재원으로 조달하는 경우로서 그 절차 또는 조건이 정부조달협정등과 불합치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을 준용한다.
- ③ 국제입찰의 이행에 따른 공표사항은 정부조달협정등에서 정한 출판물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④ 기관장 또는 제○○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 계약 사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계약 담당자”라 한다)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다.

자료: 저자 작성

[별표 1]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해야 하는 기타공공기관**

(제○○조제1항 관련)

1.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해야 하는 기타공공기관  
산업은행, 기업은행

[주 1] 조달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조달계약에 부수하는 운송 서비스의 조달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2. 「한·칠레 자유무역협정」과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해야 하는 기타공공기관  
산업은행, 기업은행
3. 「한·페루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해야 하는 기타공공기관  
산업은행, 기업은행

[별표 2]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해야 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  
(제○○조 제1항 관련)

1. 국제입찰 대상 물품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물품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2. 국제입찰 대상 용역

WTO서비스분류 (GNS/W/120)	UN표준상품분류 (CPC)	대상 용역
1.A.b.	862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
1.A.c.	863	세무 서비스
1.A.d.	8671	건축 서비스
1.A.e.	8672	엔지니어링 서비스
1.A.f.	8673	종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1.A.g.	8674	도시계획 및 조경 서비스
1.B.	84	컴퓨터 서비스
1.B.a.	841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관련 자문 서비스
1.B.b.	842	소프트웨어 실행 서비스
1.B.c.	843	데이터 처리 서비스
1.B.d.	844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1.B.e.	845	사무 기계 및 장비(컴퓨터 포함)의 정비 및 수리서비스
1.E.a.	83103	운전자 없는 선박 관련 임대/리스 서비스
1.E.b.	83104	운전자 없는 항공기 관련 임대/리스 서비스
1.E.c.	83101, 83105*	운전자 없는 기타 운송장비 관련 임대/리스 서비스(승객 15인 미만 승용차에 한한다)
1.E.d.	83106, 83108, 83109	운전자 없는 기타 기계 및 장비 관련 임대/리스 서비스
	83107	운전자 없는 건설 기계 및 장비 관련 임대/리스 서비스
1.F.a.	8711, 8719	광고대행 서비스
1.F.b.	86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서비스
1.F.c.	865	경영 자문 서비스
1.F.d.	86601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WTO서비스분류 (GNS/W/120)	UN표준산품분류 (CPC)	대상 용역
1.F.e.	86761*	성분·순도 검사 및 분석 서비스(대기, 물, 소음 수준 및 진동 수준에 대한 진단, 검사 및 분석 서비스로 한정한다)
	86764	기술 점검 서비스
1.F.f.	8811*, 8812*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자문 서비스
	8814*	임업에 부수하는 서비스(항공 진화 및 소독은 제외한다)
1.F.g.	882*	어업 관련 자문 서비스
1.F.h.	883*	광업 관련 자문 서비스
1.F.m.	86751, 86752	관련 과학 및 기술 자문 서비스
1.F.n.	633, 8861, 8862, 8863, 8864, 8865, 8866	장비의 정비 및 수리
1.F.p.	875	사진 서비스
1.F.q.	876	포장 서비스
1.F.r.	88442*	인쇄(스크린 인쇄, 그라비아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
1.F.s.	87909*	속기 서비스, 행사 대행 서비스
1.F.t.	87905	번역 및 통역 서비스
2.C.j.	7523*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 검색
2.C.k.	7523*	전자적 데이터 교환
2.C.l.	7523*	저장·전송, 저장·포함하는 고도/부가가치 모사전송 서비스
2.C.m.	-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2.C.n.	843*	온라인 정보 및/또는 데이터 처리(거래처리를 포함한다)
2.D.a.	96112*, 96113*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생산 및 배급 서비스(유선 TV 방송을 위한 서비스는 제외한다)
2.D.e.	-	음반 생산 및 배급 서비스(음향 녹음)
6.A.	9401*	폐수 처리 서비스(산업 폐수의 수집 및 처리 서비스로 한정한다)
6.B.	9402*	산업 폐기물 처리 서비스(산업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분 서비스로 한정한다)
6.D.	9404*, 9405*	배기가스 정화 서비스 및 소음저감 서비스(건설시공 서비스는 제외한다)
	9406*, 9409*	환경 검사 및 평가 서비스(환경영향평가 서비스로 한정한다)
9.A.	641	호텔 및 기타 숙박 서비스
9.A.	642	음식 수발 서비스

WTO서비스분류 (GNS/W/120)	UN표준산품분류 (CPC)	대상 영역
9.A.	6431	오락이 없는 음료 수발 서비스(CPC 6431의 철도 및 항공 운송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9.B.	7471	여행 대리점 및 패키지 관광 전문 서비스(정부수송요청은 제외한다)
11.A.b.	7212*	국내 운송을 제외한 국제 운송
11.A.d.	8868*	선박의 정비 및 수리
11.F.b.	71233*	국내 운송을 제외한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
11.H.c.	748*	화물 운송 대행 서비스 - 해운 대행 서비스 - 해운 화물 주선 서비스 - 해송 중개 서비스 - 항공 화물 운송 대행 서비스 - 통관 서비스
11.I.	-	철도 운송을 위한 화물 주선

[주 1] UN표준산품분류란 중 별표(\*)는 서비스 무역에 대한 최초의 양허에 관한 대한민국의 수정 조건부 양허안에 기술된 바에 따라 영역의 “일부”를 뜻한다.

[주 2] 국제입찰 대상 영역은 특정 국가에 대하여 그 국가가 동일한 영역을 우리나라에 개방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 3. 국제입찰 대상 공사

UN표준산품분류(CPC)	대상 공사
51	건설 공사

---

## 참고문헌

---

- 강신원, 「통신사업과 국제조달협정」, 『대외경제연구』, 2001년 제2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박노형, 『신국제경제법』, 박영사, 2018.9
- 박혜리, 「개정 정부조달협정(GPA)의 주요 내용과 정책 시사점」, 『KIEP 오 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1
- 외무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1994. 7.1
- 양준석·김홍률, 『다자무역 내 정부조달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WTO를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1.12
- 한국조달연구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른 정부조달분야 이행현황 분석 및 대응방안연구』, 산업통상자원부, 2017.10
- 한국조달연구원,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협정 해설』, 외교통상부, 2011.4
- 한국조달연구원, 『정부조달부문 대외협상의 현황과 전략』, 기획재정부, 2009
- Blank, Annet and Marceau, Gabrielle, “The History of Government Procurement Negotiation Since 1945,” *Public Procurement Law Review*, vol.5, 1996.
- Blank, Annet and Marceau, Gabrielle, “A History of Multilateral Negotiations on Procurement: from ITO to WTO,” In Hoekman, Bernard M, Mavroidis, Petros C.(Ed.), *Law and policy in public purchasing*, Ann Arbor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7.
- R. D. Anderson, “Renewing the WTO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Progress to Date and Ongoing Negotiations,” *Public Procurement Review*, Vol.16, 2007

---

## 부록 특정조달 특례규정 개정(안)

---

**제1조(목적)** 이 영은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입찰”이라 함은 내·외국인 또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여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행하는 입찰을 말하며 수의계약을 포함한다.
2. “특정조달계약”이라 함은 국가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통하여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법·시행령 및 이 영의 규정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 “발주기관”이라 함은 법·시행령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4. “일반경쟁입찰”이라 함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자격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을 말한다.
5. “지명경쟁입찰”이라 함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지명한 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입찰을 말한다.
6. “수의계약”이라 함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발주기관이 경쟁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7. “유자격자명부”라 함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물품·공사 및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미리 정한 후 그 자격을 갖춘 자를 기재한 명부를 말한다.

8. “전자경매”란 공급자가 새로운 가격 또는 평가기준과 관련되는 입찰을 정량화할 수 있는 비가격 요소의 새로운 가치 중 하나, 또는 양자 모두를 제출하기 위한 전자적 수단의 사용을 수반하는 반복과정으로서, 그 결과 입찰서의 순위가 매겨지거나 다시 매겨지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영은 국가가 체결하는 특정조달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기·탄약 또는 전쟁물자의 조달이나 국가안보 또는 국방목적수행과 관련된 조달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질서 및 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과 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자선단체·장애인 및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4. 급식에 필요한 물품 등을 조달하는 경우
5. 재판매 또는 판매에 필요하거나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공급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6.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7. 비계약적 합의 또는 지원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한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 가. 재무대리 또는 예탁
  - 나. 금융기관의 청산·관리
  - 다. 공적 부채의 판매, 상환 및 유통
9. 개발원조 등 국제원조를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10. 합작 프로젝트 체결국의 공동 이행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절차 또는 조건에 따라 조달하는 경우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절차 또는 조건이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작성된 정부조달협정(2012년 3월 30일에 채택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를 포함하며, 이하 “마라케쉬 정부조달협정”이라 한다)과 불합치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의 절차 또는 조건에 따라 조달하는 경우

나. 국제적 공여 또는 차관 등을 재원으로 조달하는 경우

③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기관과 물품·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마라케쉬 정부조달협정 등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다자간 또는 양자간 정부조달협정(국제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부문을 포함하며, 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협정의 내용에 따라 협정가입국(협정체결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특정조달계약의 체결이 제한되는 국가, 협정의 적용범위 및 특정조달계약의 적용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각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위임·위탁 등을 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실공사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국내입찰로는 조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하는 것이 해당 계약의 목적·성질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 영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조달계약”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로 본다.

⑦ 발주기관은 제2항에 의한 협정의 적용대상 특정조달계약인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할 때 협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으로 추정가격의 산정방법을 선택하거나 분할발주를 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모든 형태의 보수를 고려한 조달의 전체기간에 걸친 최대 총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1. 할증금, 요금, 수수료 및 이자
2. 조달이 대안의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조달의 총추정가격

⑧ 조달의 개별적인 요건이 두 건 이상의 낙찰이나 낙찰의 분할로 귀결되는 경우(이하 “반복계약”이라 한다), 총추정가격의 산정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직전 12개월 또는 조달기관의 직전 회계연도 동안 낙찰된 동일유형의 물품 또는 서비스의 반복계약의 추정가격으로서 직후 12개월에 걸쳐 조달될 물품 또는 서비스의 수량 또는 가액의 예상되는 변동을 고려하여 조정한 것

2. 최초 낙찰 직후 12개월 또는 조달기관의 회계연도 동안 낙찰된 동일유형의 물품 또는 서비스의 반복계약의 추정가격

⑨ 입찰, 할부구매에 의한 물품 또는 서비스의 조달 또는 총추정가격이 명시되지 아니한 조달과 관련한 추정가격의 산정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한다.

1. 기한을 정한 계약으로서

가. 계약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추정가격 중 최대가액

나. 계약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총추정가격

2. 계약이 무기한인 경우, 추산 월부금에 48을 곱한 가격

3. 계약이 기한을 정한 계약이 될 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2호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특정조달계약의 원칙)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하며, 정부조달과 관련된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하며, 정부조달과 관련된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협정가입국의 계약상대자로부터 조달되는 물품·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통상적인 무역과정에서 적용되는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의 규정과 다른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것

3. 입찰참가자격의 심사과정이나 입찰서의 평가 및 낙찰자 결정과정 등에서

부품등의 국산화율지정, 기술이전 및 대응구매 등의 수단을 통하여 협정가입국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 또는 조달조건 등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것

4. 입찰서를 접수, 개봉 및 취급하는 과정에서 그 비밀이 보장되도록 할 것
5. 전자적 수단으로 조달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조달이 정보기술 체계 및 소프트웨어로서 일반적으로 입수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수될 수 있는 다른 정보기술체계 및 소프트웨어와 상호 운용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 수행되도록 보장할 것

④ 제1항은 수입과 관련되어 부과되는 관세 및 모든 종류의 징수금, 그러한 관세 및 징수금의 부과방법, 다른 수입규정 또는 형식상 절차 및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협정 적용대상 조달을 규율하는 조치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5조(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조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공급자로부터 조달되는 물품·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협정의 내용에 따라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대상국가 및 대상물품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조(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에 대한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계약방법)** 특정조달계약의 계약방법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및 수의계약으로 구분한다.

**제8조(사용언어)** ① 특정조달계약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달대상인 물품등의 공급자가 특정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등 외국어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국가의 언어 또는 영어·불어 및 스페인어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의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영어·불어 및 스페인어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찰공고문 하단에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물
2. 입찰서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마감일
3. 발주기관(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의 입찰서 작성에 있어서 다수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영어·불어 및 스페인어 중 하나 이상의 언어를 포함시켜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과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9조(일반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 및 심사)**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요건 외에 계약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해당 계약과 같은 종류의 계약실적, 도급한도액, 시공능력,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자격을 정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급자가 파산한 경우
2. 공급자가 허위신고한 경우
3. 공급자에게 선행 계약 또는 계약들의 실질적 요건 또는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의 중대하거나 지속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
4. 공급자의 중대한 범죄 또는 다른 중대한 위법행위와 관련된 제재를 받은 경우
5. 공급자의 상업적 무결성에 부정적으로 반영되는 업무상 부정행위나 작위

또는 부작위, 세급체납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유무를 심사하고 지체없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유무를 심사하는 경우에 입찰공고 및 제15조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한 사항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의 국내외 사업활동에 근거하여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자가 입찰참가를 요청할 경우 신속하게 자격심사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자격심사를 완료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에 의한 입찰공고에서 입찰참가가 허용될 공급자 수에 대한 제한과 제한된 숫자의 공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는 한, 모든 유자격 공급자가 특정한 조달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제10조(유자격자명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기준을 매회계연도초에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하고 수시로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입찰참가자격을 심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유자격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공고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유무의 심사결과를 신청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유자격공급자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신속한 시간내에 모든 유자격자를 명부에 기재해야 한다. 유자격자명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유자격자명부에 기재된 자가 동 명부에서 제외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입찰공고)**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 목적물을 적기에 조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전에 입찰공고를 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최근 12개월 이내에 40일 이상 제13조에 따른 조달계획공고를 한 경우
3. 개별적인 조달요구가 복수로 이루어지거나 분할되어 이루어지는 계약(이하 “반복계약”이라 한다)에서 최초공고 이후에 공고를 하는 경우
4. 유자격자명부를 사용하는 경우로서 발주기관과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자 사이에 상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5. 발주기관이 제13조 제1항에 규정된 조달계획 공고를, 입찰공고 전 40일 이상 그리고 12개월 이하 공표하였고, 해당 조달계획 공고가 다음 각

가. 조달에 대한 설명

나. 입찰서 또는 참가신청서의 대략적인 제출 마감일

다. 관심있는 공급자는 자신의 조달에 대한 관심을 조달기관에 표명해야 한다는 설명

라. 조달과 관련된 서류를 취득할 수 있는 주소

마. 제13조에서 요구되는 입찰공고 내용 중에서 입수가능한 정보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5일씩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공고를 하는 경우
2. 제15조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는 경우
3.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접수하는 경우

⑤ 제3항 및 제4항을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도 공고기간은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없다.

⑥ 이 조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업적 물품 또는 서비스, 또는 이들의 조합을 구매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공무원은 공고기간을 13일 이상의 기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를 한 후 그 내용에 대하여 정정공고를 하는 경우 또는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각각 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시행령 제35조제4항·제5항을 적용한다.

**제12조(입찰공고의 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한 내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당해 조달과 관련하여 추가될 조달의 조건에 관한 사항 및 반복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후속입찰에 대하여는 그 입찰공고의 예정시기
2.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과 협상절차의 포함 여부
3. 구매·임차 및 할부구매 등 발주기관이 사용할 조달형태
4. 입찰참가자격심사신청서·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의 제출등을 위한 주소와 제출마감일 및 사용언어
5. 협정의 적용대상 여부

**제13조(조달계획공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회계연도별로 특정조달계약으로 조달할 물품·공사 및 용역에 대한 조달계획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할 수 있다.

**제14조(기술규격)**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품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기술규격을 성능 위주로 작성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에 의하고, 국제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관련법령의 규정 또는 국내표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 등이 없는 경우에는 품질 또는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기술규격을 작성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와 상호 협의하여 천연자원의 보존을 증진시키거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기술규격을 작성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한 상표·규격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고는 조달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상표·규격 등을 규정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에 상표·규격 등을 특정하는 때에는 그 특정된 상표·규격 등과 동등 이상인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 입찰에 부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는 공급하고자 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규격·품질 등이 특정된 조건과 동등 이상인 것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을 작성함에 있어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조언을 요구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아니 된다.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한 경쟁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규격을 입찰전에 공개·열람하도록 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 조달계약에 있어서 일반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때에는 시행령 제14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에 포함될 내용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한다.

**제16조(입찰서의 제출 및 접수)**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입찰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입찰서 및 이에 관련된 서류를 전신·전보 및 모사전송 등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서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즉시 서명본을 제출하게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전신등의 내용이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후에 제출된 서명본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제출된 전신등의 내용이 우선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입찰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된 일시 이후에 지정된 부서에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낙찰자등의 공고 및 정보의 공개)**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낙찰자를 결정하였거나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일의 다음날부터 72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참가자등으로부터 당해 입찰과 관련된 정보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낙찰정보등의 공개범위 및 공개의 예외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지명경쟁입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경우에는 제9조에

규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격 및 지명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19조(지명경쟁입찰 참가자의 지명 및 통지)**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을 지명경쟁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때에는 제18조에 규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명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지명함과 동시에 그 지명한 자에 대하여 제12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한 입찰공고와 관련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에 하여야 한다.

**제20조(지명경쟁입찰의 공고)**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지명경쟁입찰에 의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명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참가신청서의 제출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5일 이상이 되도록 지정하여야 한다.

**제21조(지명경쟁입찰 참가자의 자격심사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후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 심사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에 대하여 심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전에 그 취지를 당해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심사신청에 대한 심사기간을 정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지명경쟁입찰을 위한 유자격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사항을 매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9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조(일반경쟁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3조(수의계약)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입찰에 부쳤으나 응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담합된 입찰서가 제출되었거나 입찰공고등에서 요구한 조건에 부합되는 입찰서가 없는 경우
2.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예술품·특허권 또는 출판권 등 독점적 권리와 관련되거나 기술적 이유로 특정공급자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경우
3.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경쟁입찰에 의하여서는 필요한 기간내에 조달할 수 없는 경우
4.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또는 이미 계약을 체결한 공사에 대하여 추가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공급자를 변경하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등 기술적 또는 경제적으로 곤란하고, 동시에 발주기관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발주기관의 요구로 개발된 시제품등을 조달하는 경우(당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 당해 제품을 계속하여 조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원자재시장(상품거래소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7. 파산 및 법정관리기업의 자산처분 등의 사유로 인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조달하는 경우
8.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내용에 따른 디자인 공모에 당선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23조의2(전자경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자경매의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경매를 개시하기 전에 각 입찰참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자동 평가방법(입찰에 관한 서류에 제시된 평가기준에 근거하고, 해당 경매 중 순위를 자동적으로 매기거나 다시 매길 때 사용될 수리공식을 포함한다)
2. 가장 유리한 입찰서에 근거하여 계약이 낙찰될 경우, 그 입찰서의 요소에 대한 최초 평가결과
3. 해당 경매의 수행과 관련되는 다른 관련 정보

제24조(계약에 관한 기록)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 조달계약에 있어서 경쟁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때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입찰자 및 개찰에 참여한 자의 성명
2. 낙찰자의 성명, 낙찰금액 및 낙찰자 결정의 이유
3. 무효로 된 입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입찰의 내용 및 무효로 된 이유
4.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에 관한 사항
5. 물품원산지의 국가명
6.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관련 서류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문서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목적
2. 물품의 품명·규격·수량·단가·금액 등
3. 적용되는 법령조문 및 구체적인 적용사유
4. 계약상대자의 성명(상호) 및 주소
5. 계약금액 및 계약상대자 결정의 이유
6. 물품원산지의 국가명
7.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25조(계약실적보고)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계약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한 계약실적보고서는 그 주무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다.

제26조(이의신청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협정에 위배된 사항을 말한다.

#### 제27조~제38조 삭제

제39조(시행령과의 관계)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이 영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시행령 제21조·제22조 및 제72조제3항의 규정은 특정조달계약에 관한 사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국제상관례의 적용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통화, 보증금납부의 형태 및 시기, 신용장등에 의한 대가지급 방법 및 검사 등 조달절차 수행과 관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정 및 이 영의 규정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국제상관례에 의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 및 용역의 특정조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국제상관례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조달절차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협정 및 이 영의 규정과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국제상관례에 의할 수 있다.

- 제41조(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①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이하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칠레공화국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특정조달계약의 대상이 되는 용역 및 공사는 별표 3과 같다.
- ②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칠레공화국의 공급자가 참가할 수 있는 국제입찰에 대하여는 관보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공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부터 기산하여 1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 ③ 제1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 의하여 칠레공화국의 공급자가 참가할 수 있는 국제입찰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조달계약에 대하여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9.1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마라케쉬 정부조달협정의 협정가입국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항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의 공급자와 특정조달계약을 체결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정하거나 제1호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수주실적
  - 가. 별표 1에 규정된 정부기관
  -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기획재정부령에서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2. 제1호 외의 국내 수주실적.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국내 수주실적이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2조(「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페루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페루공화국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은 별표 4와 같다.

② 한·페루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페루공화국의 공급자와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수주실적(이하 이 항에서 “정부기관등과의 계약실적”이라 한다)을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정부기관등과의 계약실적이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4에 따른 정부기관
2. 제42조제1호니목 및 디목에 따른 기관

**제43조(「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①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미합중국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정부기관과 공사의 범위는 각각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②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17.5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미합중국의 공급자와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또는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5에 따른 정부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수주실적
2. 제1호 외의 국내 수주실적

**제44조(「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① 「대한민국과 콜롬비아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콜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급식에 필요한 물품 등을 조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콜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콜롬비아공화국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정부기관과 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각각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③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한·콜 자유무역협정 제14.6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콜롬비아공화국의 공급자와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 또는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정부기관등과의 계약실적이 필수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별표 7에 따른 정부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수주실적
2. 제1호 외의 국내 수주실적

**제46조(「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특례)** ①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호주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호주의 공급자에 대해서는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 혈액과 혈액제품(혈장분획제제를 포함한다)을 조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한·호주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호주의 공급자를 대상으로 국제입찰을 실시하여야 하는 정부기관은 별표 9와 같고, 용역 및 공사의 범위는 별표 10과 같다.

③ 한·호주 자유무역협정 제12.6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호주의 공급자와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낙찰자결정기준으로 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적절한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크리하자 아니하다.

1. ~~별표 9에 따른 정부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수주실적~~
2. ~~제1호 외의 국내 수주실적~~

### ※ 특례규칙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서 “거래 실례가격이 없어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등”이란 용역과 기계·기재류(機材類), 철재류(鐵材類), 식료품류, 동물류, 화공품류(비료는 제외한다), 약품류, 종이 및 판지류, 유제품류 및 목재류 등의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역 또는 시기에 따라 가격 차가 심한 경우
2. 특정 제작자만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3. 국제 시세가 없는 경우
4. 제작자의 설계에 따라서 가격차가 심한 경우
5. 공급자가 제시한 규격에 따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6.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어 예정가격을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제3조(입찰에 관한 서류에 포함될 내용)** ① 특례규정 제15조제2항에 따라 입찰서류에 포함될 설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달(조달될 물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및 수량을 포함하며, 수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추산 수량을 포함한다) 및 충족되어야 할 요건(기술 규격, 적합성 심사 인증, 계획, 도면, 지침자료를 포함한다)
2. 공급자 참가조건(참가조건과 관련하여 공급자가 제출하도록 요구되는

정보 및 서류의 목록을 포함한다)

3. 해당 기관이 계약을 낙찰시키면서 적용할 모든 평가기준과 그러한 기준의 상대적 중요도(가격이 유일한 기준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4. 조달기관이 전자적 수단으로 조달을 수행할 경우, 인증 및 암호화 요건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한 정보의 제출과 관련되는 다른 요건
5. 조달기관이 전자경매를 주최할 경우, 해당 경매의 수행 규칙(평가기준과 관련된 입찰 요소의 확인을 포함한다)
6. 공개적으로 개최할 경우, 개최의 일시 및 장소, 그리고 적절한 경우, 입회가 허가되는 사람
7. 기타 조건(지급조건, 그리고 서면 또는 전자적 수단에 의할 것인지와 같은, 입찰서 제출 수단에 대한 제한을 포함한다)
8. 물품 인도 또는 서비스 공급 일자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조달될 물품의 인도일자 또는 서비스의 공급일자를 정함에 있어서 해당 조달의 복잡성의 정도, 예상되는 하도급의 정도, 공급지점으로부터 물품을 생산하고 운송하거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시간 등의 요인을 고려한다.

③ 입찰서류에 제시된 낙찰에 적용할 평가기준은 가격 및 다른 비용요인, 품질, 기술적 장점, 환경적 특징 및 인도조건 등을 포함할 수 있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공무원은 입찰공고 또는 참가한 공급자에게 제공한 입찰에 관한 서류에 제시한 기준 또는 요건을 낙찰 전에 수정하거나, 입찰공고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수정하거나 재발간하는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공무원은 모든 수정사항 또는 재발간된 공고 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서면으로 전달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1. 수정 또는 재발간 당시 참가한 공급자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공무원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모든 공급자에게 전달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원래 정보를 입수될 수 있게 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달할 것
2. 공급자가 적절하게 개정 입찰서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내에 전달할 것

**제4조(낙찰자 등 결정의 공고)** 특례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대상자의 결정에 관하여 공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낙찰되거나 수의계약한 조달 대상·수량 및 금액
2.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대상자의 성명 및 주소
3. 조달기관의 주소
4. 낙찰자 또는 수의계약대상자의 결정절차
5. 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의 공고절차
6.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사유
7. 그 밖에 낙찰자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제5조(낙찰정보등의 공개범위와 공개의 예외)** ① 특례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른 낙찰정보 등의 공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기관의 조달관행 및 조달절차
2. 입찰 참가자격 심사신청이 거부된 사유, 입찰 참가자격이 정지된 사유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사유
3. 낙찰되지 아니한 사유, 낙찰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이름과 낙찰된 입찰서의 특징 및 장점

② 특례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라 낙찰정보 등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제1항제3호 및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공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정보의 공개로 법 집행이 방해되거나 공공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정보의 공개로 특정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밖에 공정한 경쟁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조(지명경쟁 유자격자명부 작성의 공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특례규정 제21조제3항에 따라 지명경쟁 유자격자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로서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 등에 관하여 관보에 공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자격자명부에 등록된 업체 일람표(유자격자명부를 통하여 조달하는 물품이나 서비스 또는 물품이나 서비스군의 품목분류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유자격자명부의 등록요건 및 심사방법
3. 유자격자명부의 유효기간 및 등록경신절차
4. 그 밖에 유자격자명부의 등록에 관한 사항

**제7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한 디자인 공모)** 특례규정 제23조 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내용에 따른 디자인 공모”란 해당 공모에 당선된 자와 계약을 체결할 목적으로 발주기관과 별도의 독립적인 심사단이 심사하고 모든 유자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관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한 것을 말한다.

**제8조(계약에 관한 자료 등의 요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달협정가입 국으로부터 특정조달계약에 대한 자료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실적보고)** ① 특례규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계약실적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정조달계약의 대상이 되는 물품·공사 및 용역의 계약 건수와 계약 총액
2. 특정조달계약을 체결한 물품·공사 및 용역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통일적인 분류체계에 따라 세분화한 계약 건수와 계약 총액
3. 특례규정 제23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물품·공사 및 용역의 계약 건수 및 계약 총액

② 특례규정 제25조제2항에 따른 계약실적보고서의 내용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물품·공사 및 용역의 계약 건수와 계약 총액으로 한다.

## ■ 저자약력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용선

한국조달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영숙

한국조달연구원 연구위원

### 정부조달협정(GPA)의 개정에 따른 국가계약제도 정비 방안 연구

---

발행	행	2021년 10월
저자	자	김대식 · 백용선 · 박영숙
발행인	인	김재진
발행처	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소	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전화	화	(044)414-2114(대)
홈페이지	지	<a href="http://www.kipf.re.kr">www.kipf.re.kr</a>
등록	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판 및 인쇄	쇄	세일포커스(주)

---



정부조달협정(GPA)의  
개정에 따른 국가계약제도  
정비 방안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